

제4권 제1호

2013

한국이민학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연구논문

아일랜드의 이민정책과 이민행정조직

■ 이병하

벨기에의 이민정책과 이민행정조직

■ 이충훈

프랑스의 이민정책과 추진체계

■ 설동훈



한국이민학회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

한국이민학

2013년 제4권 제1호

《한국이민학》은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의 기관지로서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발간한다. 논문기고자격은 원칙적으로 한국이민학회의 회원으로 제한한다. 단, 비회원이 투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전제로 한다.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 및 집필요강은 본지의 뒷 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한국이민학》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다음 주소로 연락하면 된다.

☎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567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연구실 내 《한국이민학》 편집위원회

전화: (063) 270-2917 팩스: (063) 270-2921

전자우편: kimanet2007@gmail.com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manet.org>

회원연회비

일반회원: 3만원

대학원생: 2만원

계좌번호: 기업은행 221-253841-04-01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학회 임원진

회 장 단

회 장 이철우 (연세대학교)

차기회장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

부 회 장 이진영 (인하대학교)

이 규 용 (한국노동연구원)

감 사 이충훈 (서강대학교)

송 영 훈 (서울대학교)

이 사

총무이사 이병하 (서울시립대학교)

편집이사 설동훈 (전북대학교)

연구이사 김석호 (성균관대학교)

기획이사 서정민 (연세대학교)

섭외이사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이사 김현미 (연세대학교)

한국이민학

2013년 제4권 제1호

연구논문

아일랜드의 이민정책과 이민행정조직 이병하	5
벨기에의 이민정책과 이민행정조직 이충훈	21
프랑스의 이민정책과 추진체계 설동훈	43

부록

한국이민학회 정관	69
한국이민학회 연구윤리규정	77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81
《한국이민학》 발간지침	83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	89

편집위원

설동훈(위원장, 전북대) 김현미(연세대) 서정민(연세대) 윤홍식(인하대)
이규용(노동연구원) 이병하(서울시립대) 이승미(우석대) 이정환(청주대)
조현미(경북대) 최현(제주대) 최홍엽(조선대) 한건수(강원대)

편집간사

박순영(전북대) 고재훈(전북대) 이태훈(전북대)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Vol.4 No.1 2013

Contents

ARTICLES

- Immigra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System in Ireland
| Byoungha Lee
 - Belgium's Immigra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r
Immigration
| Choonghoon Lee
 - Immigration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System in France
| Dong-Hoon Seol
-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

아일랜드의 이민정책과 이민행정체계

이 병 하*

역사적으로 주요 이민 송출국이었던 아일랜드는 1990년대 이후 이민 수용국으로 전환되는 이주의 변천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낳은 주요 요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적극적인 이민 수용이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아일랜드는 이민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아일랜드는 이주의 변천, 경제성장으로 인한 이민자 유입, 경제침체가 이민에 미치는 영향 등 이민연구에서 중요한 사례이다. 본 논문은 아일랜드의 이민정책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이민정책환경으로 아일랜드의 이민자 현황 및 변화 추이, 이민 및 이민정책 역사를 고찰한다. 둘째는 이민정책 현황 및 추진 체계로 이민정책의 법적 기반, 이민정책의 추진체계, 정부 부처 간 업무 분담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일랜드 이민 행정에 있어 주요 부처는 법무·평등부, 직업·기업·혁신부, 외교부 등이며 이 중 법무·평등부가 이민 관리를 책임지고, 이민과 난민 정책에 있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법무·평등부 산하의 아일랜드 이민청이 난민, 이민, 시민권, 비자 관련 행정기능을 수행하면서 종합적인 이민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이민청 산하 ‘환영과 통합처’는 난민신청자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무·평등부 산하 이민자통합진흥청은 이민자 통합정책을 개발하고 정부 간 정책을 조정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직업·기업·혁신부는 경제이민정책을 개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허가제 관리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선별적 취업이민을 추구한다. 이외에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한 부분적 비자 발급업무를 통해 이민 행정에 관여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아일랜드 이민정책의 특성을 요약하고, 한국의 이민정책에 주는 함의를 모색하려고 한다.

주제어: 이민자, 이민정책, 이민자통합정책, 경제침체, 이민청, 아일랜드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byoungha@uos.ac.kr.

I. 서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말까지 아일랜드(Ireland)는 주요 이민 송출국 중의 하나였다. 아일랜드의 지체된 경제성장과 대기근으로 인해 아일랜드인들은 다른 나라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특히 1871년과 1926년 사이의 “대규모 이주의 시대”(Age of Mass Migration)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미국, 호주 등지로 이민을 떠났다(Ruhs and Quinn, 2009). 이들은 미국의 운하와 철도 건설 루트를 따라 동부 해안의 항구를 중심으로 정착하기 시작했고, 영국의 경우 1851년 아일랜드인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총인구의 3%, 스코틀랜드 총인구의 7%를 차지하게 된다(Fanning, 2012: 164). 1970년대를 제외하고 아일랜드에서 이출 인구는 이입 인구보다 많았으며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아일랜드는 이민 송출국에서 이민 수용국으로 전환되는 이주의 변천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낳은 주요 요인 중 하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한 놀라운 경제성장에 있다. 아일랜드는 1990년대 후반기 평균 8%에 이르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그 결과 1996년 130만 개의 일자리가 2001년 170만 개로 증가하게 된다(Galvin, 2010: 209). 이 시기 아일랜드는 동아시아 신흥 개발도상국을 빔낸 “셀틱 호랑이”(Celtic Tiger)로 불리며 1997년과 2006년 사이 35%의 고용증가율과 4%대의 실업률을 나타내게 된다(Galvin, 2010: 209). 이와 같은 폭발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아일랜드는 국내적으로 노동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부로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주의 변천을 경험하게 된다.

아일랜드가 고도성장을 유지하던 시기 아일랜드는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 개방경제의 성공모델로 불리었다(김현정, 2011).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급속한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마침내 2010년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다. 이로 인해 아일랜드의 순 이민증가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일례로 비유럽연합 국적자에게 발급된 취업허가는 2007년과 2010년 사이 70%나 감소하였으며, 2009년 9월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일랜드는 떠난 사람의 수가 입국한 사람 수를 초과하였다(Loyal, 2011: 130).

이처럼 아일랜드는 이민 송출국에서 이민 수용국으로 전환된 경험, 경제성장으로 인한 이민자 유입, 경기침체가 이민패턴에 미치는 영향 등 이민연구에 있어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Barrett and Duffy, 2008). 또한, 이민연구에서 아일랜드

〈표 1〉 아일랜드의 이민 유량, 2000-2012년

연도	이출	이입	(단위: 천 명)
			순 이민증가
2012	87.1	52.7	-34.4
2011	80.6	53.3	-27.4
2010	69.2	41.8	-27.5
2009	72.0	73.7	1.6
2008	49.2	113.5	64.3
2007	46.3	151.1	104.8
2006	36.0	107.8	71.8
2005	29.4	84.6	55.1
2004	26.5	58.5	32.0
2003	29.3	60.0	30.7
2002	25.6	66.9	41.3
2001	26.2	59.0	32.8
2000	26.6	52.6	26.0

자료: CSO, *Population and Migration Estimates*. (<http://emn.ie/emn/statistics>)

사례가 가지는 이와 같은 중요성은 비슷한 이민패턴을 경험한 한국 더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연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본격적인 비교연구에 앞서 아일랜드의 이민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아일랜드의 이민정책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이민정책환경으로 아일랜드의 이민자 현황 및 변화 추이, 이민 및 이민정책 역사를 고찰하고, 둘째는 이민정책 현황 및 추진체제로 이민정책의 법적 기반, 이민정책의 추진체계, 정부 부처 간 업무 분담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아일랜드 이민정책의 특성을 요약하고, 한국의 이민정책에 주는 함의를 모색하려고 한다.

Ⅱ. 아일랜드의 이민 현황

<표 1>은 아일랜드 2000년 이후 아일랜드의 이민 유량(Migration Flows)을 보여준다. 아일랜드로의 이입 인구는 2000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2007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후 서서히 감소하다가 2010년 이후 급감하고 있다.

2011년 OECD SOPEMI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아일랜드의 외국출생인구는 17.2%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0년 8.7%에 비하면 10여 년 사이에 거의

〈표 2〉 아일랜드의 이민 현황, 2000-2009년

아일랜드							
이민 유량 (migration flows; 외국인) 나라별 정의(주민 천명당 인칭)	2000	2005	2008	2009	평균 2000-2004	2005-2009	단위(천명) 2009
이입	7.3	16.0	15.3	8.7	9.4	16.3	38.9
이출	...	...	7.2	10.5	...	...	46.7
유형별 이입 (외국인) 허가 기준 통계치(표준화)	(단위: 천명) 2008	2009	(단위: %) 2008	2009			
취업	6.0	3.1	8.9	7.9			
가족 (가족동반 포함)	11.7	10.4	17.3	23.1			
인도적 기준	0.6	0.4	0.9	0.9			
자유이동	49.3	26.5	72.9	68.1			
기타	...	...	...	...			
전체	67.6	38.9	100.0	100.0			
단기 이민(단위: 천명)	2005	2008	2009	평균 2005-2009			
유학생	...	...	...	...			
연수생	...	...	...	...			
취직 할러데이	...	...	...	...			
계절 근로자	...	...	...	...			
기업 내 전문가	...	...	...	...			
기타 단기 취업자	...	...	...	...			
난민 신청자 유입(주민 천명당 인칭)	2000	2005	2008	2009	평균 2000-2004	2005-2009	단위(명) 2009
	2.9	1.0	0.9	0.6	2.3	0.9	2 689
인구증가의 구성요소(주민 천명당 인칭)	2000	2005	2008	2009	평균 2000-2004	2005-2009	단위(천명) 2009
총계	14.5	23.9	...	...	16.8	...	...
자연 증가	6.1	8.1	...	...	7.5	...	...
순 인구이동	8.4	15.9	...	...	9.2	...	...
이입 저장(stocks of immigrants; 총 인구 중 %)	2000	2005	2008	2009	평균 2000-2004	2005-2009	단위(천명) 2009
외국 출생 인구	8.7	12.6	16.7	17.2	10.0	15.3	767
외국인 인구	...	...	...	...	...	...	...
귀화(외국인 인구 중 %)	2000	2005	2008	2009	평균 2000-2004	2005-2009	단위(명) 2009
	...	...	...	...	...	...	4 594
노동 시장 성과	2000	2005	2008	2009	평균 2000-2004	2005-2009	
고용율(%)							
자국 출생 남성	75.8	75.8	74.6	66.0	75.4	73.9	
외국 출생 남성	75.2	78.8	79.5	67.7	74.9	77.8	
자국 출생 여성	53.1	58.0	60.0	57.6	54.7	58.8	
외국 출생 여성	54.9	57.7	62.5	56.1	55.0	59.9	
실업률(%)							
자국 출생 남성	4.4	4.5	6.2	14.4	4.5	6.8	
외국 출생 남성	5.4	6.0	7.1	18.2	5.8	8.6	
자국 출생 여성	4.1	3.5	3.4	7.2	3.8	4.4	
외국 출생 여성	6.1	6.0	6.5	11.7	5.4	7.2	
거시경제지표	2000	2005	2008	2009	평균 2000-2004	2005-2009	단위(명) 2009
실질GDP(연평균 증가율 %; 미국달러)	9.7	6.0	-3.5	-7.6	6.2	1.2	
1인당GDP(연평균 증가율 %; 미국달러)	8.3	3.7	-5.2	-8.1	4.5	-0.8	31 593
취업자 수(연평균 증가율 %; 천명)	4.8	4.7	-0.7	-8.8	2.9	0.7	1 917
실업률(노동력 중 %)	4.3	4.3	6.0	11.7	4.4	6.2	

자료: OECD (2011: 289).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08년 아일랜드의 이민 유량은 이입이 인구 1000명 당 15.3명으로 이출 7.2명보다 많았다. 하지만 2009년에는 이출이 10.5명으로 이입 8.7명을 초과하게 된다. <표 2>의 거시경제지표를 보면 2008년부터 실질 GDP 증가율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실업률도 2009년 11.7%로 급증하는 등 아일랜드의 이민환경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큰 영향을 받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OECD에 의하면 아일랜드의 고용과 이입 이민은 2007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후 2년간 25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아일랜드로의 이입 이민은 2007년 110,000명에서 2010년 31,000명으로 감소하게 된다(OECD, 2011).

아일랜드로의 이민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럽연합 내 자유로운 인구이동으로 2009년 68.1%를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가족 이민이 23.1% 그리고 취업이민이 7.9%를 차지하고 있다.

<표 3>은 아일랜드로 이주한 이민자들을 국적별로 분류한 것으로 비유럽연합 국가로부터의 인구 유입은 2003-2004년 2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1만 2천 명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에 신규 가입한 회원국으로부터의 이주가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일랜드가 이들 신생 가입국의 국민에게 노동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한 몇 나라 중 하나였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며 고도 경제성장기 이들로 노동수요를 충족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Galvin, 2010: 209). 그러나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신생 가입국으로부터의 이민자 수는 2010년 9천 명 선으로 감소하게 된다.

〈표 3〉 국적별 이민자 분류, 2003-2012년

	(단위: 천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아일랜드	17.6	16.7	18.5	18.9	30.7	23.8	23.0	17.9	19.6	20.6
영국	9.1	7.4	8.9	9.9	4.3	6.8	3.9	2.5	4.1	2.2
EU13*	8.8	13.3	9.3	12.7	11.8	9.6	11.5	6.2	7.1	7.2
EU10/12**	-	-	34.1	49.9	85.3	54.7	21.1	9.3	10.1	10.4
비유럽연합	24.5	21.1	13.7	16.4	19.0	18.6	14.1	6.0	12.4	12.4
계	60.0	58.5	84.6	107.8	151.1	113.5	73.7	41.8	53.3	52.7

주: *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유럽연합 15개국

** 2004년과 2007년에 신규 가입한 유럽연합 회원국

자료: CSO, *Population and Migration Estimates*. (<http://emn.ie/emn/statistics>)

〈표 4〉 2006년과 2011년 인구 총조사에 나타난 아일랜드 거주자 국적별 분류

	2006년		2011년	
	명	%	명	%
아일랜드	3,706,683	88.8	3,927,143	86.8
영국	112,548	2.7	112,259	2.5
EU 13	42,693	1.0	48,280	1.1
EU 10/12	120,534	2.9	226,225	5.0
유럽연합 전체	284,440	6.6	386,764	8.5
기타 유럽	24,425	0.6	16,307	0.4
미주	21,124	0.3	24,884	0.5
아프리카	35,326	0.8	41,642	0.9
아시아	46,952	1.1	65,579	1.4
기타	22,422	0.5	22,210	0.5
복수국적/무국적/무응답	47,955	1.1	54,621	1.2
비 아일랜드	419,733	10.1	544,357	11.9
비유럽연합	150,249	3.4	170,622	3.8
전체	4,172,013	100.0	4,525,281	100.0

주: *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유럽연합 15개국

** 2004년과 2007년에 신규 가입한 유럽연합 회원국

자료: CSO, *Population and Migration Estimates*. (<http://emn.ie/emn/statistics>)

<표 4>는 최근 두 차례의 인구 총조사에 근거한 아일랜드 거주자를 국적별로 분류한 것으로 <표 3>보다 세분된 이민자 통계를 보여준다. 2006년과 2011년 사이 비 아일랜드 인구는 419,733명에서 544,357명으로 124,624명 늘어나 29.7% 증가하였다. 2012년 유럽이민네트워크(European Migration Network) 보고서에 의하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집단은 루마니아인으로 125% 증가하였으며, 이어서 인도인(101%), 브라질인(98%), 폴란드인(94%) 순이다(Quinn and Kingston, 2012: 24). 2011년 비 아일랜드 인구는 전체 인구 중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폴란드인이 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Ⅲ. 이민 및 이민정책의 역사

앞서 서술했듯이 아일랜드는 오랫동안 북미와 서유럽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주던 주요 이민 송출국의 하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은

아일랜드를 이민 송출국에서 이민 수용국으로 바꾸어 놓았다. 특히 1996년은 아일랜드에 일종의 전환점으로 이민의 변천을 겪은 마지막 유럽연합 국가가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아일랜드로의 이민 흐름을 요약하자면,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아일랜드계 동포의 귀환이 주요 원인이었다. 아일랜드계의 귀환은 1987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2002년 약 27,000명이 귀환하여 정점을 기록한 이후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Ruhs and Quinn, 2009). 대신 비유럽연합 국가로부터의 이민과 난민신청자가 200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아일랜드로의 이민에서 아일랜드계 동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후반 65%에서 2000년대 초반 44%로 감소한다(Ruhs and Quinn, 2009). 그러다가 2004년 10개국이 새로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이들 국가로부터의 이민이 주를 이루게 된다. 2000년대 중반 유럽연합의 신생 가입국으로부터의 이민은 아일랜드 이민자 중에서 44%를 차지하고, 비 아일랜드계 이민자 중에서 54%를 차지하게 된다(Ruhs and Quinn, 2009).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아일랜드로의 이민은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이민 송출국이었던 아일랜드는 이민 수용국으로서 새로운 이민자를 받아들일 법적,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1990년대 이전 아일랜드는 난민이나 다른 유형의 이민자들을 위한 특별한 법제를 마련하지 못했다. 따라서 2003년 이전까지 1935년 제정된 ‘국적·시민권법’(*The Nationality and Citizenship Act*)과 ‘외국인 법’(*The Aliens Act*)이 난민의 지위를 결정하거나 취업이민자를 관리하는 주요 법제로 기능하였다(Galvin, 2010: 211).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아일랜드는 증가하는 국제이주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와 정책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우선 난민 문제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 아일랜드는 1996년 ‘난민법’(*The Refugee Act*)을 제정하여 1951년 제네바 협정에 담긴 난민의 정의를 아일랜드 법에 규정하였으며 2003년 제정된 ‘이민법’(*The Immigration Act*)을 통해 난민 인정절차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Galvin, 2010: 211).

취업이민과 관련해서 아일랜드는 2003년 이전 자유방임적인 정책을 실행하였다. 2003년 이전 아일랜드의 취업이민정책은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개입이 거의 없이 고용주에 의해 주도되는 정책이었다. 아일랜드의 취업이민 정책은 고용허가제를 근간으로 고용주가 노동시장 테스트(labor market test)를 통해 내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음을 증명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것이다. 이 시기 취업이민정책의 특징은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 숫자,

산업 분야 등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이 거의 없는 자유 방임주의적인 기초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3년 아일랜드는 ‘고용허가법’(The *Employment Permits Act*)을 제정하면서 2004년 유럽연합에 신규 가입한 회원국으로부터의 노동자들이 아일랜드 노동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동시에 아일랜드 정부는 기존의 자유방임적인 정책에서 더욱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게 된다. 그 이유는 유럽연합의 확대 이후, 아일랜드의 부족한 노동력을 비유럽연합 국가가 아닌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받아들이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 및 국적을 규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노동력 유입이 갑자기 증가할 경우 아일랜드의 노동시장이 교란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고용허가법’을 통해 아일랜드 정부는 주로 저숙련 산업 분야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기 시작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 노동자들에게 먼저 고용허가를 주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아일랜드 시민권 분야는 1956년 제정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아일랜드 국적·시민권법’(Irish *Nationality and Citizenship Act*)에 의해 규율된다. 아일랜드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누구에게나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Jus Soli Principle*)를 유지하고 있었다. 1989년 아일랜드 대법원이 아일랜드에서 출생한 비 아일랜드인 부모의 자녀는 아일랜드 시민이며, 그 자녀의 가족들도 아일랜드 내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이래, 아일랜드 출생 자녀들의 비 아일랜드계 부모들에게 거주권을 부여해왔다. 특히 난민신청자 중에서 아일랜드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거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4년 개정된 ‘아일랜드 국적·시민권법’은 아일랜드 출생 자녀들의 비 아일랜드계 부모들에게 거주권을 주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 2005년 이후 이들이 거주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의 출생 이전 아일랜드에 4년 중 3년 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유학생 혹은 난민신청자로 거주한 기간은 이 3년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Honohan, 2010).

IV. 이민 행정의 체계

1. 이민정책의 주요 개념

아일랜드의 이민정책 분야는 크게 경제이민, 가족재결합, 기타 합법 이민, 통합정

책, 시민권 및 귀화, 국경통제, 그리고 난민 분야로 나뉜다.

경제이민 분야에서 아일랜드 정부는 신규 고용허가를 고숙련 분야에 제한하여 발급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민자를 수용하려고 하고 있다. 가족재결합은 주로 난민 인정자의 가족재결합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1년 아일랜드 이민청은 560건의 난민 인정자 가족재결합을 허용하였으며 233건을 기각한 바 있다(Joyce, 2012: 24). 이외에 결혼을 통한 아일랜드 국적자의 배우자 동반 역시 가족재결합 정책의 주요 분야 중 하나이다. 기타 합법 이민 분야에서는 유학생 정책, 비자 면제 프로그램, 성직자의 이민 등을 다루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민자 통합정책을 통해 아일랜드 내 이민자들이 아일랜드 사회에 더욱 잘 통합되고, 아일랜드 내 다양성을 증진하며, 이민자들의 사회, 정치, 경제적 참여를 촉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민권 및 귀화 역시 주요 이민정책 분야 중 하나로 시민권 인정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시민권 취득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권 취득에 있어서 영어와 시민윤리 테스트를 강조하고 있다. 국경통제 분야에서는 비자 발급과 불법이민자 단속 등을 중점 과제로 특히 아일랜드 국경정보시스템(Irish Border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여 불법체류자를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난민정책은 1996년 제정된 ‘난민법’에 의해 규율되며, 난민신청은 난민신청조정관실(Office of the Refugee Applications Commissioner)에 의해 일차적으로 심사되고, 기각될 경우 난민항소재판소(Refugee Appeals Tribunal)에 항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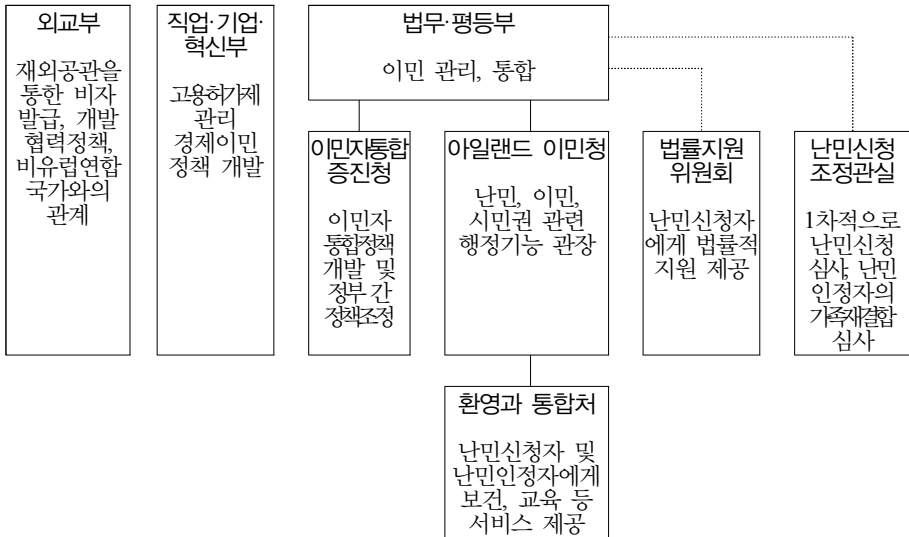
2. 아일랜드의 이민행정체계

아일랜드 이민 행정에 있어서 주요 부처는 법무·평등부, 직업·기업·혁신부, 외교부 등 3개 부처이다. 이 중 법무·평등부가 이민 행정에 있어 주도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직업·기업·혁신부는 경제이민 분야를 관장하며, 외교부는 비자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아일랜드의 이민행정체계는 <그림 1>에 요약되어 있다.

법무·평등부는 이민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법무·평등부 장관은 이민과 난민 분야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아일랜드 경찰 내 이민국(The Garda National Immigration Bureau)은 이민과 관련된 경찰업무 특히 불법이민자 추방, 국경통제, 인신매매 단속 등을 책임지고 있다.

법무·평등부 산하에는 아일랜드 이민청(Irish Naturalisation and Immigration Service)

〈그림 1〉 아일랜드의 이민행정체계



이 설립되어 있다. 아일랜드 이민청은 난민, 이민관리, 이민자 통합, 시민권 관련 행정기능을 관장하고 있다. 아일랜드 이민청은 2005년 이민과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민과 난민 이슈에 있어 범정부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¹⁾ 주요 업무영역은 비자 업무, 이민 서비스, 시민권, 투자이민, 유학업무, 난민, 송환 등이다.

아일랜드 이민청은 산하에 ‘환영과 통합처’(Reception and Integration Agency)를 두고 있다. ‘환영과 통합처’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조정하고자 설립되었다. 난민신청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환영과 통합처’는 산하 숙박시설을 통해 난민신청자를 수용하며, 여기에 수용된 난민신청자에게 보건,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환영과 통합처’는 특정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 극빈자들의 자발적 귀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환영과 통합처’는 교통편을 제공하고, 필요하면 숙박시설을 제공하기도 한다. 원래 ‘환영과 통합처’는 이민자 통합 업무도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 업무는 2007년 7월 ‘이민자통합증진청’(Office for the Promotion of Migrant Integration)으로 이관되었다.²⁾

1) The Irish Naturalisation and Immigration Service, *About INS*. <http://www.inis.gov.ie/en/INIS/Pages/WP07000075>.

2) *Integration*. <http://www.ria.gov.ie/en/RIA/Pages/Integration>

법무·평등부는 산하에 ‘이민자통합증진청’(Office for the Promotion of Migrant Integration)을 두고 있다. 이민자통합증진청은 각 정부 부처, 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이민자 통합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주된 기능은 아일랜드의 합법 이민자들이 아일랜드 사회에 더욱 통합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 발전시키고, 이민자 통합을 저해하는 인종차별행위를 조사, 보고하며, 난민의 재정착을 돕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민자통합증진청은 다음과 같은 핵심전략을 수립하고 있다.³⁾

- 이민자 통합과 관련된 주요 행위자들과의 협의를 통한 정책 발전
- 공적 부문에 있어 통합정책 조정
- 가용한 범위 내에서 이민자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자원 제공
- 인종차별행위 모니터링 및 인종차별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지원
- 난민들의 재정착 프로그램 관리

이민자통합증진청에 의해 추진되는 아일랜드 이민자 통합정책의 핵심 기조는 다음과 같다.⁴⁾

- 이민자 통합 증진을 위해 비정부기구 및 시민사회와의 동반관계 강화
- 이민자통합정책과 기타 사회통합정책과의 연결성 강화
- 이민자 집단이 주류 사회와 격리된 ‘병행사회’(parallel society)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분명한 정책 초점을 가지고 이민자를 주류화하는 정책 실행
- 이민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 지역 차원의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 더욱 통합된 공동체 건설을 위해 지자체, 스포츠클럽, 각종 종교단체, 정당의 역할 강조

법무·평등부가 아일랜드 이민 행정에 있어 핵심부처이지만, 직업·기업·혁신부(Department of Jobs, Enterprise and Innovation) 역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직업·기업·혁신부는 산하에 노무국(Labor Affairs Division)을 두고 있으며, 노무국은 경제 이민 특히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chemes)를 관장하고 있다.

3) The Office for the Promotion of Migrant Integration, *Role of the Office*. <http://www.integration.ie/website/omi/omiwebv6.nsf/page/aboutus-roleofofficepromotionmigrantintegration-overview-en>.

4) *Policy Statement: Migration Nation*. <http://www.integration.ie/website/omi/omiwebv6.nsf/page/aboutus-migrationnation-en>.

노무국 산하에는 경제이민정책실(Economic Migration Policy Unit)이 있어서 경제이민정책과 외국인의 아일랜드 내 고용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선도함으로써 취업이민정책을 수립, 실행하고 있다. 또한, 경제이민정책실은 이민자들이 아일랜드 경제에 공헌하는 부분에 관한 연구를 증진하고, 기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이민을 모색하고 있다.⁵⁾

또한, 직업·기업·혁신부는 고용허가제를 관리하면서 아일랜드 내국민으로 채워지지 않는 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을 유럽연합 내 혹은 비유럽연합 국가들로부터 취업 이민을 통해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직업·기업·혁신부는 고용허가신청 절차 진행, 고용허가 관련 지침 마련, 고용허가 관련 정보 및 통계자료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Joyce, 2012: 6-7).

법무·평등부와 직업·기업·혁신부 외에 외교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도 비자 발급업무를 통해 아일랜드 이민 행정에 관여하고 있다. 비자 발급 및 안내 업무는 법무·평등부 산하 아일랜드 이민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법무·평등부의 비자담당실(Visa Office)이 없는 국가의 국민이 아일랜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비자 발급업무를 수행한다. 외교부는 오로지 비자 발급을 위한 행정업무만을 수행하지, 비자정책과 비자 발급 결정권은 갖고 있지 못하며, 이러한 권한은 법무·평등부가 가지고 있다(Joyce, 2012: 7).

아일랜드의 이민정책과 이민 행정은 그 본격적인 시작이 1990년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기간 내에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일랜드 이민정책 추진체계에서 법무·평등부가 주도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경제 이민 관련 부분은 직업·기업·혁신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외교부가 이민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범정부 차원에서 이민정책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공식적인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다. 대신 정책결정자들은 2년마다 비정부기구와의 포럼을 통해 이민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정책의 문제점 등을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Joyce, 2012: 73).

V. 결론

아일랜드는 20세기 말까지 전 세계로 이민자를 내보내는 주요 이민 송출국의 하

5) <http://www.djei.ie/labour/migration/index.htm>.

나였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진 경제성장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 빠른 속도로 이민 수용국으로 전환된 국가이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이민자들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아일랜드로의 이입 이민은 1980년대 후반부터 아일랜드계 동포들의 귀환으로 촉진되기 시작해, 이후 난민을 비롯한 비유럽연합 국가로부터의 이민이 주를 이루다가, 2004년 유럽연합이 확대된 이후 유럽연합의 신생 가입국으로부터의 이민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이주 패턴의 변화에 발맞춰 아일랜드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각종 이민 관련 법제를 마련하고 이민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민정책에 있어 초기에는 자유방임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였지만, 유럽연합에 새로 가입한 국가로부터 이민이 증가하자 정부개입을 통해 이민자의 수와 직종 등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아일랜드 이민 행정에 있어 주요 부처는 법무·평등부, 직업·기업·혁신부, 외교부 등이며 이 중 법무·평등부가 이민 관리를 책임지고, 이민과 난민 정책에 있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법무·평등부 산하의 아일랜드 이민청이 난민, 이민, 시민권, 비자 관련 행정기능을 수행하면서 종합적인 이민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이민청 산하 ‘환영과 통합처’는 난민신청자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무·평등부 산하 이민자통합진흥청은 이민자 통합정책을 개발하고 정부 간 정책을 조정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직업·기업·혁신부는 경제이민정책을 개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허가제 관리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선별적 취업이민을 추구한다. 이외에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한 부분적 비자 발급업무를 통해 이민 행정에 관여하고 있다.

아일랜드 이민정책과 이민행정은 한국의 이민정책과 행정에 있어 중요한 비교사례이다. 두 나라는 기타 선진국과 달리 뒤늦게 이민 수용국의 대열에 합류한 후발 이민 수용국으로 빨리 이민정책과 이민행정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취업이민에 있어 고용허가제를 실행하고 있으므로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외국인 인력정책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며, 특히 경제위기 시에 어떻게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민정책추진체계와 관련해서 아일랜드의 법무·평등부 주도 모델과 이민청의 역할을 향후 보다 통합적인 이민정책을 수립,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한국이 참고해야 할 주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사점 및 함의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아일랜드 사례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를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 놓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현정. 2011. “EU의 자본 및 노동의 이동과 지역 경제: 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29(3): 125-157.
- Barrett, Alan, and David, Duffy. 2008. “Are Ireland’s Immigrants Integrating into Its Labor Market?.”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2(3): 597-619.
- Éinrí, Piaras Mac, and Allen White. 2008. “Immigration into the Republic of Ireland: A Bibliography of Recent Research.” *Irish Geography* 41(2): 151-179.
- Fanning, Bryan. 2012. “Developmental Immigration in the Republic of Ireland and Taiwan.” *Taiwan in Comparative Perspective* 4: 154-175.
- Galvin, Treasa. 2010. “Ireland: From Emigrant to Immigrant Society: Transition and Change in the Republic of Ireland.” *Immigration Worldwide: Policies, Practices, and Trends*, edited by Uma A. Segal, Doreen Elliott, and Nazneen S. Mayada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onohan, Iseult. 2010. “Citizenship Attribution in a New Country of Immigration: Ireland.”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6(5): 811-827.
- Joyce, Corona. 2012. *Annual Policy Report on Migration and Asylum 2011: Ireland*. Dublin: The Economic & Social Institute European Migration Network.
- Loyal, Steven. 2011. *Understanding Irish Immigration: Capital, State, and Labour in a Global Ag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OECD. 2011.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SOPEMI 2011*.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Quinn, Emma, and Gillian Kingston. 2012. *The Organisation of Asylum and Migration Policies 2012: Ireland*. Dublin: The Economic and Social Institute European Migration Network.
- Ruhs, Martin, and Emma Quinn. 2009. “Ireland: From Rapid Immigration to Recession.” *Migration Information Source*, September 1, 2009.

(2013. 4. 4. 접수; 2013. 4. 30. 수정; 2013. 5. 23. 채택)

Immigra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System in Ireland

Byoung-ha Lee
University of Seoul

This paper aims to examine immigration policy in Ireland. Ireland has been paid attentions in migration studies. Ireland experienced migration transition from migrant-sending country to migrant-receiving on since 1990s because of the influx of immigrants caused by a rapid economic growth in this period. However, the 2008 Global Economic Crisis directly hit the economy of Ireland, and migration flow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this sense, immigration policy in Ireland is an important case to examine migration transition, increase of immigrants due to economic boom, and impacts of economic recession on migration pattern and so on. I mainly investigate two dimensions of immigration policy in Ireland. First of all, I examine policy environment such as trend in immigration statistics and history of immigration. Secondly, I analyze the legal foundation of immigration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and intra-governmental coordination. Immigration policy is mainly implemented by Department of Justice and Equality, Department of Jobs, Enterprise and Innovation, and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Department of Justice and Equality makes final decisions on immigration and refugee policies. Under the department, Irish Naturalization and Immigration Service covers a variety of policy areas such as refugee, immigration, citizenship, visas and so on. Reception and Integration Agency offers various services to refugees, and Office for the Promotion of Migrant Integration develops immigrants integration policy and coordinates immigration-related policies with other governmental branches. Department of Jobs, Enterprise and Innovation is in charge of selective labor migration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lso participate in immigration policy by issuing visas. In conclusion, I aim to summarize the characteristics of immigration policy in Ireland and to find its implication to Korea's immigration policy.

Key words: immigrants, immigration policy,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economic recession, immigration agency, Ireland

벨기에의 이민정책과 이민행정조직

이충훈*

이 글의 목적은 벨기에의 이민정책과 이민행정조직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비교의 관점에서 이민청에 관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벨기에 이민의 역사와 현황, 주요 이민정책과 정책 패러다임의 변동, 이민 행정체계의 구성과 메커니즘, 다른 행정 수준에서의 이민 행정 영역과 운영, 이민 행정 영역에서의 주요 행위자들에 대해 검토한다. 벨기에의 이민행정 은 이민행정의 통합보다는 행정 조직 간의 조정 및 협의, 그리고 합의에 기반을 두고 전체 이민 행정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벨기에, 이민정책, 이민행정, 이민행정조직, 이민청

I. 이민의 역사와 현황

1. 이민의 역사

벨기에의 근대 이민사는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세기 들어 벨기에 남부의 왈롱(Wallonia)지역에서 성장하기 시작한 노동집약적인 산업 은 벨기에북부 플랑드르 지역 농민의 대규모 이민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이러한 이민패턴은 20세기 초반까지 지속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왈롱 지역에서의 노동력 부족의 심화는 주로 폴란드와 이탈리아로부터 대규모 이민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1920년에서 1930년 사이에 약 170,00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었다(Martiniello and Rea, 2003).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이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은 지속하였다. 특히 벨기에의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chlee0815@sogang.ac.kr.

주요 산업이었던 석탄 광산업의 경우 ‘석탄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노동력의 부족 현상이 심각했다. 벨기에 정부는 석탄 광산업에 대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임금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노동력 부족 현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벨기에 정부는 이탈리아(1946년), 스페인(1956년), 그리스(1957년), 모로코 (1964년), 터키(1969년), 알제리(1970년), 그리고 유고슬라비아(1970년) 등과 쌍무적 조약을 체결하여 대규모 노동력을 유입했고, 1970년대 들어 석탄 산업의 위기가 도래하자, 이들 노동자는 철강과 화학, 건축, 그리고 교통업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기 시작했다(Martiniello and Rea, 2003).

이러한 이민패턴은 1974년 새로운 이민법의 제정 때문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74년 이민법은 기존에 취업이민을 통해 벨기에에 입국·체류하고 있던 이민 노동자를 합법화하는 대신에 향후 취업이민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9,000여 명의 이민 노동자들에게 거주허가(Residence Permit)가 부여되었다(Martiniello and Rea, 2003).

1974년 이후 벨기에로의 이민 유형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유럽연합 국가의 일원으로서 1968년 로마 협약과 유럽연합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제기된 유럽연합 소속 국가 시민권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1974년 이후에는 특히 프랑스와 네덜란드로부터의 이민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여타의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로부터의 이민 역시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둘째로, 가족 재결합(Family Reunification)을 통한 이민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 요인이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의 증가를 초래했다면, 가족 재결합을 통해 비유럽연합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유학생, 특히 저개발국으로부터의 유학생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들 중 많은 경우, 학업을 마친 후에 벨기에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이들 중 많은 수의 유학생들이 벨기에 정부가 장려해 온 발전도상국에 대한 발전 프로그램에 참여·활동하고 있기도 하다(Martiniello and Rea, 2003).

1974년 이후에는 이러한 정규적인 이민과는 달리, 망명 신청자(Asylum Seekers)와 서류 미비자(the undocumented) 역시 증가해왔다. 특히 1980년대와 90년대 들어 망명 신청자의 수는 많이 증가해왔다. 1990년에 12,897명을 기록했던 망명 신청자는 1993년에는 26,408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1994년에서 1997년 사이에 11,000명에서 14,500명에 머물렀던 망명 신청자의 수는 1998년에 접어들어 다시 22,064명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반면 서류 미비자에 대하여 벨기에 정부는 1990년대에 연간 1,000여 명 정도를 합법화시키면서 점진적으로 서류 미비자를 수용해왔다. 그러나 1998년 망명 신청이 기각되어 본국으로 송환 중이던 한 나이지리아 여성(세미라 아다무)이 사망하고 이에 따라 내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망명 신청자와 서류 미비자에 관한 관심이 촉발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벨기에 정부는 서류 미비자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을 목표로 2000년 합법화 계획을 발표하고, 콩고인과 모로코인을 중심으로 한 서류 미비자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을 단행했다(Martiniello and Rea,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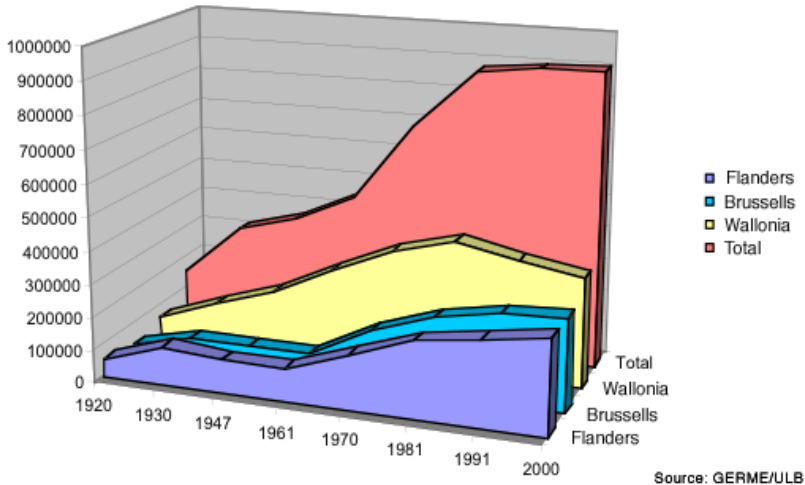
이러한 이민 역사를 통해 현재 벨기에는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다문화적이고 다인종적인 국가 중의 하나로 성장해왔다. 2000년대 들어 외국에서 출생한 벨기에 시민권자는 전체 시민권자의 12%에 이르기 시작했고, 이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들 중 60%는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의 이민자들이고, 40%는 비유럽연합 회원국 출신 이민자가 차지하고 있다. 비유럽연합 회원국 출신 이민자 중에는 모로코인과 터키인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벨기에의 수도이자 유럽연합의 수도이기도 한 브뤼셀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 전체 인구의 28.5%가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이민 노동자를 받아들였던 왈롱 지역도 이민자는 전체 인구의 10%, 그리고 플랑드르 지역 역시 전체 인구의 5% 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Martiniello, 2003: 225).

2. 이민자 현황: 구성과 분포

벨기에는 1993년 프랑스 문화권인 왈롱 지역과 네덜란드 문화권인 플랑드르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적, 언어적 의미에서의 연방 국가로 재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이민자의 현황과 분포 역시 브뤼셀, 왈롱, 플랑드르 지역을 중심으로 파악해왔다.

<그림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벨기에에서의 전체 외국인 수는 20세기를 거쳐 지속해서 확대되어왔다. 특히,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전체 외국인 수는 다른 어떤 시기에 비교해서도 급속하게 확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벨기에의 세 지역은 20세기 동안 외국인의 인구수에 있어서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동자의 유입이 활발했던 왈롱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교해 여전히 많은 수의 외국인이 있지만 1980년대부터 그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브뤼셀과 플랑드르 지역의 외국인 수는 1960년대 이후부터 지속해서 확대되어왔다.

〈그림 1〉 외국인 인구의 지역별 변화 양상



자료: Martiniello and Rea (2003).

〈표 1〉 시민권을 획득한 이민자 수, 1985-1997년

	1985	1986-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전체	%
전체	83,421	53,560	46,485	16,379	25,787	26,129	24,581	31,678	308,020	100.0
네덜란드	10,088	1,893	1,992	222	335	341	265	292	15,428	5.9
프랑스	16,953	4,444	2,179	532	618	608	547	530	26,411	10.1
이탈리아	25,377	7,637	22,362	1,431	2,325	2,098	1,941	1,726	64,897	24.3
스페인	3,764	1,099	1,795	196	281	247	262	22	7,865	2.9
포르투갈	958	410	230	85	117	100	93	111	2,104	0.8
그리스	1,249	856	940	170	312	294	253	238	4,312	1.5
기타 EU국	6,529	1,465	732	145	207	249	243	249	9,819	0.5
소계: EU	64,918	17,804	29,417	2,781	4,195	3,937	3,604	3,367	130,023	48.9
기타유럽국	2,637	3,213	1,038	796	1,005	851	823	1,982	12,345	3.8
터키	661	2,988	3,886	3,305	6,273	6,572	6,609	7,835	38,129	9.4
알제리 튀니지	3,189	2,240	1,418	959	1,284	1,317	962	1,187	12,556	2.2
모로코	3,464	10,554	6,862	5,500	8,638	9,146	7,915	11,078	63,157	17.5
기타 비EU국	6,544	10,415	2,496	2,113	2,730	2,502	2,538	5,410	34,748	1.4
난민	2,008	6,346	1,368	925	1,662	1,804	2,130	819	17,062	5.6
소계: 비EU국	18,503	35,756	17,068	13,598	21,592	22,192	20,977	28,311	177,997	51.1

자료: Martiniello and Rea (2003).

반면에 1985년부터 1997년까지 시민권을 획득한 이민자의 수를 보여주고 있는 <표 1>에서는 시민권을 획득한 이민자의 출신 국가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개별

국가로 살펴보았을 때, 1985년부터 1997년까지 벨기에 시민권을 획득한 이주자의 수는 이탈리아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모로코인, 프랑스인, 터키인, 네덜란드인 순이었다. 그러나, 이탈리아인과 프랑스인, 그리고 네덜란드인의 벨기에 시민권 획득자 수는 급격하게 감소추세에 있었던 반면, 모로코인과 터키인의 벨기에 시민권 획득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EU 회원국 출신과 비회원국 출신으로 나눈 소계에서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1985년부터 1997년까지 시민권을 획득한 EU 회원국 출신의 이민자와 비EU 회원국 출신 이민자의 비율은 거의 같았지만, 벨기에의 시민권을 획득한 EU 회원국 출신 이민자는 급격하게 감소추세에 있지만, 비EU회원국 출신의 이민자는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유럽연합 차원의 지역적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시민들에게 허용된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의 이동과 거주와 자유는 특정한 회원국의 시민권을 획득할 동기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이러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비EU 국가 출신의 이민자의 경우, 벨기에의 시민권을 획득할 동기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21세기에 들어서도 20세기 후반까지 발전해왔던 이민자의 현황과 구성, 그리고 지역적 분포의 경향들은 지속하고 있다. 우선 <표 2>와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21세기 들어서도 외국인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2000년에 897,110명

〈표 2〉 지역별 외국인 수, 2000년

	벨기에인	외국인			총인구	외국인 비율
		EU출신	비EU출신	계		
전국	9,341,975	563,556	333,554	897,110	10,239,085	8.8
브뤼셀	685,705	140,356	133,257	273,613	959,318	28.5
플랑드르	5,646,601	164,569	129,081	293,650	5,940,251	4.9
왈롱	3,068,306	270,228	71,813	342,041	3,410,347	10.0

자료: Martiniello and Rea (2003).

〈표 3〉 지역별 외국인 수, 2011년

	벨기에인	외국인			정치적 난민	미확인	불명	총인구
		EU출신	비EU출신	계				
전국	9,832,010	746,972	372,284	1,119,256	2,801	2,456	802	10,951,266
브뤼셀	766,744	221,482	130,862	352,344	616	1,135	99	1,119,088
플랑드르	5,878,652	268,848	159,138	427,986	1,522	970	383	6,306,638
왈롱	3,186,614	256,642	82,284	338,926	663	351	320	3,525,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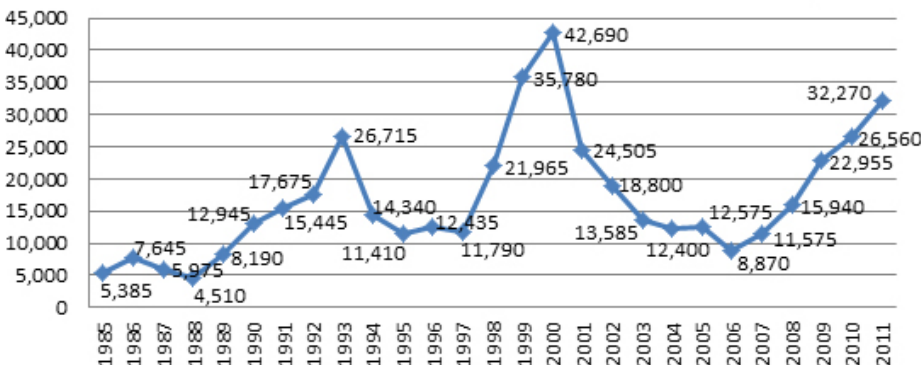
자료: Petrovic (2012)

이었던 외국인 수는 2011년에는 1,119,256명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왈롱의 경우 342,041명에서 338,926명으로 하락했지만, 브뤼셀과 플랑드르에서의 외국인 수는 각각 273,613명에서 352,344명으로, 293,650명에서 427,986명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지역별로는 플랑드르에서의 외국인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외국인 수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추동하는 것은 특히 EU 출신 외국인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 EU 출신 외국인 수는 2000년에 563,556명에서 2011년에는 746,972명으로 증가했지만, 비EU 출신 외국인 수는 2000년에 333,554명에서 2011년에는 372,284명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반면에, 1985년부터 1997년까지의 벨기에 시민권 취득의 경향을 고려한다면, 벨기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민자의 경우, 21세기에 들어서도 EU출신 이민자보다 비EU 출신 이민자가 많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한다면, EU출신 외국인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이민자의 수는 감소하고, 비EU출신 외국인의 수는 EU출신 외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적지만, 벨기에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비EU 출신 이민자의 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20세기와 21세기를 통틀어 벨기에에서 외국인의 수는 지속해서 증가했지만, 20세기 후반부터 가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망명 신청자의 수는 증감을 반복해왔다. <그림 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985년 5,385명에 불과했던 망명 신청자 수는 1993년 26,715명으로 정점에 올랐다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다시 2000년에 들어 42,690명으로 가장 많은 망명 신청자 수를 기록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 8,870명을 기록한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망명 신청자 수, 1985-2011년



자료: Petrovic (2012)

〈표 4〉 벨기에의 외국인 유학생 수와 비중, 2009년

출신국	인원(명)	전체 학생 중 비율(%)
전체	46,446	11.82
EU27	30,530	7.77
프랑스	16,471	4.19
아프리카	7,851	2.00
네덜란드	4,877	1.24
아시아	4,621	1.18
폴란드	644	0.16
터키	379	0.10
북미	365	0.09

자료: Petrovic (2012)

그러나 벨기에의 경우, 벨기에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접국들—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망명 신청자가 입국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망명 신청자가 정점에 올랐던 2000년(42,690명)의 경우, 독일에는 78,565명, 프랑스에는 38,745명, 네덜란드에는 43,895명, 영국에는 80,315명의 망명 신청자가 있었다. 프랑스를 제외한 주변국들의 망명 신청자 수는 벨기에에서의 망명 신청자 수를 웃돌아왔다(Petrovic 2012).

반면에 유학생의 경우, <표 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2009년 현재 벨기에 전체 학생의 11.82%를 기록할 만큼 성장해왔다. 즉, 벨기에 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은 유학생이라는 것이다. 전체 유학생 중 대부분은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벨기에 주변국—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온 유학생들이다. 반면에,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은 2009년 현재 7,851명으로 전체 학생의 2.00%를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 출신 유학생은 4,621명으로 전체 학생의 1.18%를 차지하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유학생의 절대적인 수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지만, 벨기에 전체 학생에서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유럽연합 회원국 평균(8.03%)을 웃돌고 있고, 여타의 주변국—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들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예를 들어, 2009년 현재, 독일의 경우, 전체 학생에서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57%, 프랑스는 11.47%, 네덜란드의 경우 7.17%, 영국은 20.66%를 기록했지만, 벨기에의 경우, <표 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1.8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영국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지만,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Petrovic, 2012).

Ⅱ. 이민정책: 정의와 역사

1. 이민정책의 정의와 제도적 기반

근대의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벨기에의 이민정책 역시 민족 국가의 배타적인 권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이민정책은 두 개의 주요 영역, 즉 이민 흐름의 통제 및 규제와 이민자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벨기에의 이민정책은 유럽 통합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민 흐름의 통제 및 규제와 관련하여 유럽 통합의 원리는 전면적으로 관철됐다. 이런 의미에서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이민 흐름의 통제 및 규제와 관련하여 일종의 수렴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이민자의 통합에 관한 정책들은 유럽 통합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개별 회원국들의 민족 국가로서의 배타적인 권리에 더욱 많은 기반을 두고 있다. 벨기에 역시 이민 흐름의 통제 및 규제와 관련하여 유럽 통합의 원리에 따라 이민정책을 수립해온 왔지만, 이민자의 통합에 관한 정책에서는 벨기에 연방 국가의 배타적인 권리에 따라 정책을 수립해왔다고 할 수 있다.

벨기에의 이민정책은 크게 이민 흐름의 통제 및 규제와 관련된 ‘합법적 승인’, ‘난민 및 망명 신청자’, ‘불법 이민 및 서류 미비자’에 대한 정책과 이민자의 통합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합법적 승인’에 관한 정책에서는 유럽 통합의 원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들은 자유롭게 벨기에에 입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간에 상관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합법적 입국 승인’에서 두 번째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가족 재결합을 통한 이민이다. 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벨기에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본 국으로부터 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유학생과 망명 신청자 역시 ‘합법적 승인’의 범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취업이민의 경우, 취업허가 A와 취업허가 B라는 두 가지의 취업허가(Work Permit)가 존재한다. 취업허가 A는 모든 종류의 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류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취업허가를 의미하고, 취업허가 B는 벨기에인이나 유럽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채울 수 없는 직종만 고용인에게 1년의 기한 동안 노동할 수 있는 허가를 의미한다. 취업허가 B의 경우 최초의 기한은 1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특정한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기도 하다(Martiniello, 2003: 226-227).

‘난민 및 망명 신청자’에 관한 정책 역시 유럽 통합의 원리 및 국제 인권 협약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물론 망명 요청을 검토하고 난민 및 망명 자격 부여에 대한 해석의 권한은 여전히 개별적인 민족 국가에 부여되어 있고, 벨기에 역시 이러한 해석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난민이나 망명의 범주를 구성하고,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의 흐름을 통제하거나 규제하며,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심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난민 및 망명 신청자’에 관한 벨기에의 정책은 유럽 통합의 원리 및 국제 인권 협약에 근거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불법 이민 및 서류 미비자’와 관련하여 벨기에의 주된 정책은 점진적인 통합과 추방의 이중적인 정책을 시행해왔다. 서류 미비자의 경우, 1974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전면적인 합법화를 시행했고, 연간 천여 명 정도의 불법 이민자 및 서류 미비자를 점진적으로 통합해왔다. 1999년에 시행된 전면적인 통합의 경우, 그 대상자로, 비정상적으로 긴 기간 동안 망명 신청 절차에 머물러 있었던 자, 본국의 전쟁과 같은 요인 때문에 송환할 수 없는 자, 심각한 질병을 앓는 자, 적어도 6년 동안 벨기에를 떠나라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던 자 등이 포함되었다(Martiniello, 2003: 229-230). 반면 송환 및 추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벨기에는 송환자의 본국과 쌍무적 관계를 통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송환 및 추방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민자의 통합에 관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정치 수준—연방과 커뮤니티 및 지역—에서 서로 다른 정책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왔다. 우선 연방 차원에서 이민자의 통합에 관한 정책은 시민권에 관한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국적법의 변화는 연방 차원에서의 이민자의 통합에 관한 정책이 더욱 포용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선 7년 이상 합법적으로 벨기에에 체류한 외국인들은 자신이 벨기에인이라는 간단한 선언만으로 벨기에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귀화 과정 역시 더 단순해졌다. 3년 동안의 합법적 거주나 2년 동안의 난민 지위만으로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절차상의 모든 비용은 무료가 되었다. 요약하면 연방 차원에서의 이민자 통합정책은 합법적으로 벨기에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시민권을 획득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과 난맥상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더욱 많은 외국인이 벨기에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Martiniello, 2003: 231).

시민권 이외에 교육, 의료, 주택, 고용 등에 대한 이민자의 통합은 커뮤니티 및 지역 수준에서 다루어져 왔다. 역사적으로 벨기에의 두 주요 지역, 즉 플랑드르와 왈롱지역은 이민자의 통합과 관련하여 다른 접근을 취해왔다. 플랑드르의 경우, 오

랫동안 네덜란드식의 다문화적 모델로 이민자의 통합에 접근해 왔으며 공식적으로 다문화 정책을 시행했지만, 왈롱은 프랑스식의 공화주의적 모델을 기반으로 이민자 차별금지정책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두 지역의 접근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왈롱의 경우, 문화적 다양성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하여 점차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지만, 플랑드르 지역의 경우는 기존의 다문화 정책에서 간과되었던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좀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Martiniello, 2003: 230).

2. 이민정책 패러다임 변동: 이민정책사

벨기에의 경우 이민정책의 패러다임은 크게 두 차례에 걸쳐 변동했다. 우선 1974년 장관 위원회(The Council of Ministers)의 결정은 그 이전의 이민정책 패러다임인 자유방임적 패러다임에서 제로 이민(Zero-Immigration)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2000년대 이후로, 벨기에는 영구적인 이민 국가(Permanent Immigration Country)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해왔다.

1974년 이전까지 이민정책의 패러다임은 노동시장의 논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즉, 노동 공급이 부족할 경우, 해외로부터 이주 노동자를 통해 노동 공급을 충족시키는 것이 이민정책의 핵심적인 과제였다. 이주 노동자들은 벨기에에서 거주권을 획득하고 이후 시민권자가 되거나 그들의 모국으로 되돌아갔다.

1974년 장관 위원회의 이민에 관한 세 가지 주요 결정—① 새로운 취업이민의 공식적인 금지, ② 불법 이민에 대한 통제, ③ 수천 명에 달했던 서류 미비 이주 노동자의 사면—은 제로 이민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벨기에가 사실상 이민 국가였다는 점을 부인하고, 이민을 주도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따라 벨기에로의 이민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거나, 금지하거나, 혹은 그 흐름을 역전시키고자 하는 정책들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동시에 제로 이민 패러다임으로의 변동은 기존의 시장 논리에 입각한 이민정책에서 국가의 논리에 입각한 이민정책으로 정책적 논리가 전환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책적 논리의 전환은 고도기술 노동자의 유입과 관련된 최근의 벨기에 기업과 국가 간의 대립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벨기에 기업의 경우 고도기술 노동자의 유입을 통해 벨기에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공급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지만, 국가는 그러한 방식의 문제 해결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해왔다.

반면에, 취업이민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로 이민 패러다임은 다른 유형의 이민 성장에 의해 도전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가족 재결합을 통한 이민의 확산이라든지, EU 회원국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주, 유학생의 증가, 난민 및 망명 신청자들의 증가, 불법 이민자들의 증가 등은 제로 이민정책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새로운 이민 유형이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2000년대 들어 벨기에는 영구적인 이민 국가라는 패러다임으로 이민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이민정책 패러다임에 도전했던 새로운 이민 유형에 대한 정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유럽연합과 연방 수준, 그리고 지역 수준에서의 다양한 이민정책들을 이민 주도형 관점에서 수용하거나 조정하기 시작했으며, 나아가 비유럽 국가의 발전 문제를 이민정책과 연계하는 방안과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모색해왔다.

Ⅲ. 이민행정의 체계

1. 이민행정체계의 기초 원리

벨기에의 경우 이민행정체계의 기초 원리는 벨기에 국가 형태, 즉 연방 국가라는 형태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연방 국가로서의 벨기에는 연방 수준의 정치체, 세 개의 지역(플랑드르, 왈롱, 브뤼셀, 세 개의 언어에 기반을 둔 커뮤니티(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적인 의미에서 이런 정치체들은 동등하지만, 다른 영역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맡고 있다. 또한, 지역과 커뮤니티는 정치체로서 중첩되어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플랑드르 지역과 커뮤니티는 하나의 행정부와 하나의 의회로 통합되어 있지만, 브뤼셀에서는 프랑스어 커뮤니티와 플랑드르 커뮤니티가 브뤼셀 거주자들—외국인 포함—을 위한 문화, 교육, 복지 및 의료 정책에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한은 플랑드르 커뮤니티 위원회, 프랑스 커뮤니티 위원회, 그리고 두 커뮤니티에 공통된 문제를 다루는 공동 커뮤니티 위원회가 행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역과 커뮤니티들은 교통, 공공업무, 상수도 정책, 문화 정책, 교육, 공공 의료, 환경, 주택, 경제 및 산업 정책을 추진할 권한을 갖고 있다 (European Migration Network, 2012: 6).

연방 차원에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는 장관(Ministers)과 국무위원(State Secretaries)

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리(The Prime Minister)가 수장을 맡고 있다. 장관의 수는 15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중 적어도 7명은 두 개의 주요 커뮤니티 각각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한다. 총리와 장관은 정부와 다양한 연방 공공 서비스의 행정을 책임지게 되어 있다. 장관들은 그들의 정책과 행정에 관하여 하원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연방 수준에서의 입법권은 정부와 상원 및 하원 모두에게 있다(European Migration Network, 2012: 7).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민정책은 이민의 흐름 및 통제와 관련된 정책과 이민자의 통합과 관련된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다면적인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민정책을 수행하는 이민 행정 조직 역시 연방과 지역, 그리고 커뮤니티 수준에서 다양한 부서에 분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민과 망명, 그리고 국적과 관련된 문제는 연방 정부에 행정 권한이 있지만, 이민자의 통합과 관련된 행정 권한은 지역과 커뮤니티 수준의 정치체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시민권에 대한 심사는 연방 하원이 하지만, 취업허가는 지역 정부가 내어주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도 이민 문제에는 다양한 부처들이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경제부 산하에는 이민 관련 통계를 책임지는 통계청이 있고, 내무부에는 외국인청(Foreigners' Office)이 있었으며, 외무부와 고용부, 그리고 사회통합부 역시 이민 문제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다루어왔다. 이런 부처들은 이민 문제에 관하여 서로 다른 정책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부처 간 조정의 어려움 덕분에, 이민정책과 정책의 수행 간에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망명 신청자의 수용과 관련된 이민 행정은 사회통합부에서 처리했지만, 이민과 난민 정책에 대한 행정은 내무부에서 다루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벨기에의 이민 행정체계의 기초 원리는 분화에 있다. 실제로 이민 행정체계는 연방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및 커뮤니티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 이러한 이민 행정체계의 내적인 분화와 함께 내적으로 분화된 행정 조직 간의 합의와 조정의 원리 역시 강조됐다. 따라서 벨기에의 이민 행정체계의 기초 원리는 이민 행정체계의 체계 내적 분화와 분화된 행정 조직 간의 합의 및 조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이민행정 체계의 역사: 주무 기관의 변동

벨기에의 이민 행정체계는 이민정책의 수행에 따른 행정체계의 내적 분화로 특

징지를 수 있다. 이러한 분화를 가져온 결정적인 요인으로서는 우선 벨기에의 국가 형태와 이민정책의 분화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연방 정부와 지역, 커뮤니티로 이루어진 국가 형태와 각각이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권한, 그리고 이민 흐름의 규제와 통제에 대한 정책과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으로의 이민정책의 분화는 이민 행정체계의 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로, 이민 유형의 다변화 역시 이러한 이민 행정체계의 분화를 촉진해왔다. 즉, 1974년 이후에 이민의 합법적 승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던 가족 재결합, 유학생, 난민 및 망명 신청자, 그리고 불법 이주자 및 서류 미비자 등의 등장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이민행정체계의 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도 2008년에 이민 흐름에 대한 통제와 규제에 대한 정책을 전담하는 이민 및 망명 정책을 위한 장관과 국무위원이 신설되었고, 2011년에는 이민과 난민, 그리고 사회통합부에서 관장하고 있던 망명 신청자의 수용에 관한 정책의 행정을 포괄하는 국무위원이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 국무위원 산하에 내무부 소속의 이민국, 난민 판무관, 이민법에 따른 기소위원회, 그리고 여전히 사회통합부에 남아있는 망명 신청자의 수용을 위한 연방 기구가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 국무위원 역시 취업이민이나 시민권 획득과 관련된 행정에 관해서는 이를 관장하고 있는 여타의 연방 부처들과의 합의를 통해 이민 행정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역이나 커뮤니티 차원의 이민 행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European Migration Network, 2012: 6-7).

3. 이민행정의 영역들과 운영¹⁾

벨기에의 이민 행정 영역들은 다른 수준의 정치체들—연방, 지역 및 커뮤니티, 로컬—과 행정조직들이 이민행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연방 정부 차원에서 내무부에는 이민행정과 관련된 세 개의 부서가 있다. 이는 이민국(Immigration Department), 난민 판무관실(Office of the Commissioner General for refugees and stateless people), 그리고 이민법에 따른 기소위원회(The Council for Alien Law Litigation) 등이다. 이민국의 경우 외국인의 출입과 거주, 정착, 그리고 추방과 관련된 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서류 미비 외국인을

1) 이 장의 주요 내용에 관해서는 European Migration Network (2012: 7-16) 참조.

대상으로 한 구류 센터를 운영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민국은 이민의 흐름을 관리하고 가족 재결합이나 단기 체류 신청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다. 또한, 유럽연합법에 근거하여 이민과 관련된 입법 기능이 있으며,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여타의 부처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거주권이 없는 외국인을 추방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난민 판무관의 경우 난민 및 망명 신청자를 심사하고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민법에 따른 기소위원회는 이민국과 난민 판무관의 결정에 관하여 이민자들이 항소할 경우, 그것에 대한 심의와 판결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통합부 산하에는 망명 신청자의 수용을 위한 연방 기구(Federal Agency for the Reception of Asylum seekers)가 놓여 있다. 이 기구의 행정 영역은 주로 망명 신청자 수용 센터의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망명 신청자의 인간적인 수용을 책임지고 있다. 수용 네트워크는 24,000여 곳에 달하는 수용 장소를 포함하고 있고, 이 기구는 여타의 정부 부처들, NGOs, 그리고 비영리 단체들과 동반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다. 또한, 자발적인 송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및 시 차원에서 수용 시설의 통합을 추진할 권한을 갖고 있다.

외무부의 경우, 벨기에의 난민 및 이민에 관한 외교 정책의 행정, 발전, 조정 등을 위하여 일종의 지침을 작성하고, 발전시키며, 감독해야 할 목적이 있다. 또한, 벨기어로 이주하거나 비자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비자를 발급하는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노동 및 사회 대화부(Labor and Social Dialogue)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관련된 법에 따라 그것에 관한 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틀을 마련하는 데 그칠 뿐이고,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관련된 행정 권한은 지역 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법무부에는 이민행정과 관련된 세 개의 부서가 있다. 우선, 후견인 사무소(The Guardian Office)는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이민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후견인 사무소는 후견인들을 보조하고 양성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후견인은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이민자들이 벨기에에 정착하고, 의료 보험과 교육을 받도록 할 책임이 있다. 또한, 필요시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러한 아동들이 벨기에에서의 거주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둘째로, 국적에 관한 입법국(Legislation on Nationality)은 벨기에 국적의 취득 및 상실과 관련된 개별적인 소송을 전담한다. 또한,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국

적의 법적 측면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국적에 대한 정보를 공중에게 알리는 행정 권한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신매매와 인간 밀수국(Human trafficking and Human smuggling)은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사 위원회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원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부(FPS Economy, S.M.E.s, Self-employed and Energy)는 이민행정과 관련하여 특정한 범주에 속해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카드(Professional Cards)를 발급하고 자영업자들과 자유직 및 사업에 관한 규제를 시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와 자영업자, 자유직이나 여타의 서비스 제공자 등의 등록을 책임지고 있다.

연방 경찰의 경우, 국경 경비대를 운용하고 있고, 일반적인 경찰 활동 속에서 불법체류자나 서류 미비자를 발견했을 시 이민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인신매매와 인간밀수가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고를 토대로 검사의 결정에 따라 인신매매나 인간밀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마지막으로, 평등한 기회와 반인종주의 센터(Centre for Equal Opportunities and Opposition to Racism)는 외국인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과 이민 흐름의 본성 및 범위에 관하여 정부에 주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하고, 구류 센터를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인신매매와 인간밀수에 관한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지역 수준의 경우, 각각의 지역—플랑드르, 왈롱, 브뤼셀—은 공통으로 통합 및 경제 이민과 관련된 행정 권한을 갖고 있다. 우선 플랑드르의 경우 통합을 위한 행정에는 지역 내부 정책국(the Agency for Interior policy, 시 경찰국, 시민 통합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행정부의 통합정책 위원회가 통합정책을 발전시키고, 조정하며,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통합을 위한 행정은 통합 센터와 통합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시민 통합 프로그램들은 환영 사무실(Welcome Offices)이 운용하며, 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반면에 경제적 이민의 경우, 플랑드르 지방정부의 행정 고용국 고용처 이민과가 취업허가 신청을 심사하고 취업허가를 발급하는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플랑드르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민자의 통합을 위하여 일반 복지 업무 센터(Centers of general welfare work)를 두고 있다. 이 센터는 인신매매의 희생자들과 망명 신청자들을 원조하는 행정기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주택, 사회보장, 소득, 인간관계 등 벨기에에서의 일상 삶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왈롱 지역은 다시 프랑스어 커뮤니티와 독일어 커뮤니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커뮤니티 모두 경제적 이민과 관련된 행정 권한을 갖고 있다. 프랑스어 커뮤니티의 경우 왈롱 지역 고용부가, 독일어 커뮤니티의 경우, 독일어 지역부가 취업허가에 대한 신청을 심사하고 취업허가를 발급하는 행정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합을 위한 행정의 경우, 행정의 권한은 왈롱 보건, 사회보장, 평등한 기회부에 있으며, 지역, 사회보장, 보건국이 실제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의 7곳에 통합을 위한 지역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센터들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으로는 새로운 이민자에 대한 직업 소개 및 직업 훈련, 주택, 의료, 고용 및 사회 통합에 대한 소개 및 원조, 외국인의 사회문화적 행사에 대한 참여 독려, 문화간 대화의 증진, 외국인에게 적합한 공적 서비스 및 비영리 조직들에 대한 지원, 지역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여가 활동의 증진, 통계 데이터의 수집과 발간, 통합에 유용한 정보의 공유, 왈롱 지역 정부의 통합정책들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브뤼셀의 경우, 브뤼셀 수도 지역이 경제적 이민과 관련하여 취업허가를 발급할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반면 통합 행정의 권한은 플랑드르 커뮤니티 위원회와 프랑스 커뮤니티 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플랑드르 커뮤니티의 경우, 지역 통합 센터가 이민자를 위한 직업 훈련과 고용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 브뤼셀 환영 사무실이 시민 통합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커뮤니티의 경우, 문화간 대화의 증진을 위하여 지식 및 훈련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사회적 응집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 및 평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로컬 수준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민 행정 조직은 사회보장을 위한 공공 센터(Public Centers for Social Welfare)를 들 수 있다. 이는 특히 망명 신청자의 수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정 조직으로서 지역에서 망명 수용 장소를 물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공공 센터는 또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지역민에게 긴급 원조를 제공하고 비정규적으로 벨기에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긴급 의료 지원을 위한 원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행정 단위에서의 이민행정과 더불어 비정부 조직과 국제조직들이 다양한 수준의 이민 행정에 동반관계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익숙한 적십자(Red Cross)의 경우, 의료 및 정신적 문제와 관련된 이민 행정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즉, 이민자들의 겪을 수 있는 고립감과 주변화를 치유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존중을 함양하는 이민 행정 등에 동반관계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4. 주요 행위자들의 역할과 관계

이민 행정체계의 주요 행위자들은 이민 행정체계의 내적 분화에 따라 각각 특정한 영역에서 이민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런 행위자들은 고유의 행정 영역에서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연방 정부는 이민의 흐름의 통제하고 규제하는 행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지역과 커뮤니티, 그리고 로컬 수준의 정치체들은 이민자의 통합과 관련된 행정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비정부 조직과 국제조직들이 다양한 수준의 이민 행정에 동반관계를 맺으면서 참여해왔다.

이민 행정 체계 내에서 각 행위자의 관계는 동반관계를 구성하면서 형성된다. 여기서 동반관계란 이민정책의 시행 및 이민 행정이 다른 행정 조직 간의 조정과 협의, 그리고 합의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연방 내무부 산하의 이민국은 같은 부처 소속의 난민 판무관실, 사회통합부 소속의 망명 신청자의 수용을 위한 연방 기구, 지역 정치체들, 연방 경찰, 법무부 산하의 검사 위원회, 외무부 산하의 대사관과 영사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와 동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각각의 이민 행정 영역의 행위자들은 그러한 행정 영역의 독자성을 바탕으로 행정 영역 간의 조정과 협의,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전체 이민정책의 시행과 이민 행정을 떠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요 행위자들의 관계 구성의 메커니즘은 벨기에 연방 국가의 구성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실제로, 벨기에의 경우, 각각의 정치 단위—연방, 지역, 커뮤니티, 로컬 및 코뮌—은 주권에 해당하는 권한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으며, 정치 단위 간의 조정과 협의, 그리고 합의에 기반을 두어 벨기에라는 국가를 구성해왔다.

IV. 이민청: 구조와 기능²⁾

1. 법률적 정의와 과제

벨기에의 경우 이민청이라고 부를 수 있는 행정 조직은 연방 내무부 산하의 이민국으로 볼 수 있다. 이민국은 2011년에 난민 판무관실, 이민법에 따른 기소위원회, 그리고 사회통합부의 망명 신청자의 수용을 위한 연방 기구와 더불어 이민과 난민

2) 주요 내용에 관해서는 Immigration Department of Belgium (2010) 참조.

정책의 행정을 포괄하는 국무위원의 신설에 따라 그 산하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모든 행정 조직들은 여전히 독립적인 조직적 틀을 유지하고 있다.

이민국은 1980년 12월 15일 법(Act)과 1981년 10월 8일 왕의 칙령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법과 칙령은 외국인의 벨기에 영토에 대한 접근, 거주, 시설 및 퇴거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법과 칙령에 근거하여 이민국의 주된 행정 임무는 이민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이민국은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확한 규정에 따라 행정적인 결정을 내리고, 편견 없는 평가를 통하여 객관성을 담보하며, 법에 따라 올바르게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행정적인 처리 시간을 단축하며, 각각의 사례들을 개별적으로 다룬다는 원칙(case by case)을 세우고 있다.

2. 업무영역

이민국의 주된 업무는 벨기에에 입국하여 체류하려는 비유럽연합 회원국의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에 있다. 비자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단기 체류 비자로 3개월을 기한으로 한 여행비자와 사업비자, 그리고 가족 방문 및 의료 비자를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 비자로, 학생 비자, 고용인 비자, 가족 재결합 비자, 인도주의적 이유에 따른 비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비자 발급을 위하여 이민국은 외무부 산하의 대사관 및 영사관과 협력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및 시의 정치체들, 공공 검사 위원회 등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또한, 이민국은 난민 및 망명 신청자를 등록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유럽연합의 난민 및 망명 신청자 관련 프로그램인 유로닥 시스템(Eurodac system)을 운영하고 있으며, 망명 신청의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난민 정책에 관하여 연대성의 원칙에 따라 유럽연합이 난민으로 지정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행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민국은 모든 외국인이 이민과 거주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필요할 경우,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벨기에로부터의 추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망명 신청이 거부되었거나 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구류 센터를 관리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단 구류 센터의 수감 대상자 중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의 경우, 구류 센터 대신에 집이나 아파트에 수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과 아파트를 관리하는 업무 역시 이민국의 업무영역에 포함된다.

또한, 이민국의 결정에 대하여 외국인이나 이민자가 이민법 기소위원회나 국가 위원회, 시민 법정과 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그러한 위원회나 법정 및 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는 것 역시 이민국의 업무 영역에 속한다.

3. 조직 특성과 인력

이민국은 연방 내무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 2011년에 이민과 난민 그리고 사회 통합부에서 관장하고 있던 망명 신청자의 수용에 관한 정책의 행정을 포괄하는 국무위원이 신설되고, 이에 따라 이 국무위원 산하에 내무부 소속의 이민국, 난민 판무관, 이민법에 따른 기소위원회, 그리고 여전히 사회통합부에 남아있는 망명 신청자의 수용을 위한 연방 기구가 놓이게 되었지만, 다른 이민 행정 조직과 마찬가지로 이민국 역시 독자적인 행정 조직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이민국에서 이민 행정을 처리하는 총인원은 약 2,0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이중 약 1,000여 명 정도는 브뤼셀에 있는 이민국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약 1,000여 명 정도가 구류 센터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민국에는 이민국을 총괄하는 한 명의 국장이 있으며, 이 국장은 이민국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자문관들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이민국의 조직 체계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³⁾

기본적인 조직의 구성은 이민국의 업무영역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이민국 내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서는 ‘영토와 국경 통제부’(Control on the Territory and Border Control)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국경통제와 지역 행정 지원부’, ‘영토 통제부’, ‘구금 센터’로 나누어져 있다. 이 외에 이민국은 ‘입국 및 거주’(Entry & Residency)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와 ‘망명’(Asylum) 부서, ‘이민국 전체를 지원’하는 부서와 ‘이민국의 행정 수행을 지원’하는 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민국장 직속으로는 이민국의 정책을 자문하는 ‘정책 지원’(Policy Support)부서와 ‘홍보’(Communication) 부서, 그리고 유럽 기금부서가 있다. 특히 ‘홍보’ 부서는 이민행정과 관련된 다른 부처와의 연락 및 대언론 활동을 책임지고 있고, 유럽 기금부서는 재정적 차원에서 유럽연합의 이민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벨기에 이민국 홈페이지. Available from https://dofi.ibz.be/sites/dvzoe/FR/Documents/_Organigram_DOFI_ENG.pdf Internet: accessed Jan. 5, 2013.

V. 결론: 한국에 대한 합의

벨기에의 이민행정은 벨기에 연방 국가의 구성 및 이민정책의 분화와 관련하여 행정체계의 내적 분화와 분화된 행정 조직 간의 조정 및 협의, 그리고 합의를 그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민국은 이민의 흐름에 대한 통제 및 규제의 행정을 전담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적 신청 및 심사와 국적 부여 업무를 제외하면 (벨기에의 경우 이는 연방 하원에서 전담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출입국관리소의 행정기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벨기에의 경우, 이민 행정의 다양한 영역들을 통합하기보다는 각각의 행정 조직 간의 동반관계를 통한 조정 및 협의, 그리고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벨기에의 사례는 이민 행정기능과 역할의 통합에 대한 합의보다는 분화된 이민 행정 조직 들어간 데 어떻게 이민 행정이 조율되고, 협이가 이뤄지며, 합의에 기반을 둔 전체 이민 행정체계가 운용되는가에 관한 시사점과 합의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합의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민 행정 조직 간의 실제적인 조정과 조율, 협의 및 합의 과정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벨기에 이민행정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특히 이민자 통합정책 및 그 행정의 대부분이 연방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지역, 커뮤니티, 코뮌 등 연방 국가보다는 하위의 행정 단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비교의 관점에서 기존 연방 국가들의 이민자 통합정책의 행정뿐만 아니라 ‘지방 분권화’를 표방하는 한국에 있어서도 중요한 합의를 제공한다.

참고문헌

- European Migration Network. 2012. *The Organisation of Migration and Asylum Policies in Belgium*. (Available from https://emnbelgium.be/sites/default/files/publications/the_organisation_of_asylum_and_migration_policies_21.11.2012.pdf. Internet; accessed January 5, 2013).
- Immigration Department of Belgium. 2010. *Belgium and Migration*. (Available from https://dofi.ibz.be/sites/dvzoe/FR/Documents/2012_EN_Belgium-and-Migration_ImmigrationDepartment.pdf. Internet; accessed January 5, 2013).

- Martinello, Marco. 2003. "Belgium's Immigration Polic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1): 225-232.
- _____, and Andrea Rea. 2003. "Belgium's Immigration Policy Brings Renewal and Challenges." *Migration Information Source*. (Available from <http://www.migrationinformation.org/feature/display.cfm?ID=164>. Internet; accessed January 5, 2013).
- Petrovic, Milica. 2012. "Belgium: A Country of Permanent Immigration." *Migration Information Source*. (Available from <https://www.migrationpolicy.org/article/belgium-country-permanent-immigration>. Internet; accessed January 5, 2013).

(2013. 3. 3. 접수; 2013. 3. 31. 수정; 2013. 5. 1. 채택)

Belgium's Immigra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r Immigration

Choonghoon Lee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provide brief understanding of Belgium's immigration policy and administration, and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the Office of Immigration Service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it examines the history of immigration in Belgium and its present situation, Belgian immigration policy and its paradigm shifting, the composition and mechanism of administrative system for immigration, the fields of immigration administration and its operation at different levels of administration, major actors in the fields of immigration administration. Belgian immigration administration provide some implications about how immigration administration system is operated on adjustment, discussion, and consensus among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for immigration, rather than how immigration administration is integrated.

Key words: Belgium, Immigration policy, Immigration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r immigration, the Office of Immigration Service

연구논문

프랑스의 이민정책과 추진체계*

설동훈**

이 글은 프랑스 이민정책과 추진체계를 다음 네 측면에서 고찰한다. (1) 이민자 수용·통합 모형 중 하나로 프랑스 모형의 특성을 평가한다. (2) 프랑스에서 이민자 수용의 역사를 살펴보고, 국내 이민자 규모와 구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민 현황을 파악한다. (3) 이민정책 기조를 파악하고, 이민법 내용을 고찰한 후, ‘이민자와 그 자녀’와 ‘프랑스 사회구성원 전체’ 대상 이민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4) 정책총괄, 정책집행, 정책조정 세 분야로 구분하여 이민 행정 조직과 그 임무를 분석하고, 이민정책 추진체계를 파악한다.

주제어: 프랑스, 이민정책, 이민법, 이민 행정, 추진체계

I. 서론

프랑스에서는 양차 세계대전 이후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남유럽과 동유럽 출신 취업이민자를 수용하면서 취업이민이 시작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구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나라 출신 이민자를 수용하였다(Hollifield, 2000, 2004; Castles and Miller, 2009). 프랑스는 1945년부터 1973년까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자에게 개방적 수용 정책을 펼쳤으나, 1973년 석유파동 이후 경기가 위축되면서 1974년부터는 ‘선별 이민’(immigration choisie)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렇지만, 프랑스는 난민·망명자들에게 우호적인 국가로 2010년 기준 유럽 제1의 난민 수용국이자,

* 이 글은 한경구·설동훈·이철우·이충훈·이혜경·정기선·한진수, 『해외 각국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 설동훈·강기정·이병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제 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2011; 설동훈·이혜경·조성남,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06 중 저자가 집필한 부분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dhseol@chonbuk.ac.kr.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난민 수용국이다.

프랑스의 이민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 식민지 아프리카 지역 출신 이민자와 이민 2세들은 낮은 교육수준과 높은 실업률을 보인다. 그들은 프랑스 사회에 부정적 현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2005년에는 ‘이민자 청년 소요사태’가 발발하였다(박단, 2006; 이기라 외, 2007; 이정옥, 2010).¹⁾ 프랑스 사회에서 이슬람교도에 대한 격리와 차별은 심각한 인종갈등을 낳았다. 프랑스의 이슬람 사회는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그들 중 약 90%는 비국민이다. 불법 이민자의 대부분이 파리, 리옹 및 기타 대도시 중심부 주변의 빈곤 지역에 거주 중이며, 그들 대부분이 실업 상태에 있다. 예컨대,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수감자의 11%가 이슬람교도인 영국과 달리, 프랑스 내 수감자 중 무슬림 비율은 60-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슬람 지도자는 프랑스 내 깊은 인종 및 사회적 분열은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였다(Moore, 2008). 이를 계기로 프랑스에서는 이민자 사회통합이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2005년 니콜라 사르코지(Nicola Sarkozy)가 내무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 프랑스는 한층 강화된 이민 통제정책을 추구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퇴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2006년 7월 25일 프랑스 의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발효된 ‘이민 통합법’(Loi n° 2006-911 du 24 juillet 2006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에서는 ‘가족 재결합’(regroupement familial) 요건이 강화되었고,²⁾ 그에 따라 프랑스 내에서 가족 재결합을 원하였던 이민자들은 분노하였다.

프랑스는 쉥겐조약(Schengen Agreement)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4월 이

1) 파리 북쪽 클리스 수 부와(Clichy-sous-Bois)에서,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인 10대 청소년 두 명의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오랫동안 억눌려온 이민자들의 울분이 폭발하여 거리시위가 일어났다. 두 소년은 특별한 사유 없이 경찰의 추격을 받았고, 피신하기 위해 변전소로 들어갔다가 감전되어 사망하였다.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 전국적인 ‘이민자 청년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고, 프랑스 정부는 국가 비상상황을 선포하여, 주민에게 외출을 삼갈 것을 당부하였다. 유럽연합은 프랑스 정부에 거리 상황 정리 자금으로 50만 유로를 지원하였다. 파리 외곽지역에서 경찰과 이민자 청소년 간의 난투극은 지금도 흔히 발생한다.

2) ‘가족 재결합’은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이 아닌 외국인이 프랑스에 있는 가족과 결합하기 위해 체류허가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가족 재결합 정책을 수정한 목적은 이민자들이 프랑스의 가치를 존중하도록 하고,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며, 강제결혼 또는 복혼(複婚)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이다. 이 법률에 따른 가족 재결합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가족 재결합은 EU회원국 출신이 아닌 외국인이 프랑스에 있는 가족과 결합하기 위해 체류증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유럽 공동체 인권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②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재결합을 위해서는 적어도 프랑스 체류한 지 18개월이 지나야 하고(2006년까지는 12개월이었음), ③ 최저임금(salaire minimum de croissance: SMIC) 이상의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하며, ④ 프랑스 내에 합법적인 거주지가 있고, ⑤ 정교분리원칙, 남녀평등, 일부일처제 등 ‘프랑스인의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가치’를 위배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만, 가족 재결합이 가능하다(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282).

탈리아를 거쳐 입국하는 튀니지인들을 막기 위해 프랑스-이탈리아 국경을 통제함으로써 대내외적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우파정부는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할 때까지 프랑스인의 국민정체성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강력한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해왔다.

사람들은 2012년 5월 사회당 출신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이 당선된 후 프랑스 이민정책이 방향을 크게 선화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올랑드는 결선투표를 1주일 앞둔 시점에서 프랑스의 이민정책에 대한 견해를 전격적으로 밝혔다. 그는 프랑스에 이민자가 너무 많다며 경제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시점에서는 자국민의 일자리 확보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경제 이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른바 ‘부르카 금지법’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³⁾ 그의 발언은 프랑스 이민정책의 기초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우파에서 좌파로의 정권 교체로 인해 프랑스의 이민정책은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천명한 것이다. 이는 올랑드 집권 이후의 실제 이민정책 집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오늘날 프랑스의 이민정책과 추진체계를 다음 네 측면에서 고찰한다. 첫째, 이민자 수용·통합 모형 중 하나로 프랑스 모형의 특성을 평가한다. 둘째, 프랑스에서 이민자 수용의 역사를 살펴보고, 국내 이민자 규모와 구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민 현황을 파악한다. 셋째, 이민정책 기초를 파악하고, 이민법 내용을 고찰한 후, ‘이민자와 그 자녀’와 ‘프랑스 사회구성원 전체’ 대상 이민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넷째, 정책총괄, 정책집행, 정책조정의 세 분야로 구분하여 이민 행정 조직과 그 임무를 분석하고, 이민정책 추진체계를 파악한다. 결론에서는 이 글의 논의를 요약하고, 프랑스 사례가 한국에 대해 제공하는 함의를 찾아보기로 한다.

II. 이민자 수용·통합 모형

이민자 수용·통합 모형 중에서 프랑스는 ‘동화모형’의 전형에 가장 가까운 것으

3) ‘공립학교 내 눈에 띄는 종교적 상징 착용 금지법’(La loi sur les signes religieux dans les écoles publiques), 일명 ‘스카프법’(scarf law) 또는 ‘부르카 금지법’은 2004년 2월 14일 프랑스 의회에서 찬성 439표, 반대 36표라는 압도적 표 차로 통과되었다. 프랑스에서는 그 근거를 1905년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위한 법’(Loi du 9 décembre 1905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에서 찾고 있다.

로 평가된다(Castles and Miller, 2009; 설동훈, 2000). 프랑스의 동화모형은 ‘공화주의 모형’으로 불리는데, 그 핵심은 이민자가 프랑스 시민으로서 정치공동체에 통합됨으로써 문화적 통합이 달성될 것이라는 데 있다. 1789년 그레구아르(Grégoire) 사제가 유대인과 신교도에 대해 “민족으로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거부하지만, 개인으로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허용한다.”라고 말한 것처럼(김정희, 2004: 176), 프랑스의 동화모형은 ‘공동체나 집단 수준의 동화’가 아니라 ‘개인 수준의 동화’를 전제로 한다.

프랑스혁명을 거쳐 제3공화정 시기에 만들어진 보편주의적 원칙을 따르는 ‘공화주의 모형’은 하나의 모순을 체화하고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오래전에 국민이 형성된 점, 전 국민의 동질성, 정치적 틀의 굳건함 등 ‘완성된 국민’ 모형을 나타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원래 국민의 구성을 바꾸는 결과를 초래하는 대량 이민 유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19세기부터 프랑스는 이탈리아·벨기에·폴란드 출신 이민자를 받아들였고, 그들은 서서히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었다. 그들은 “싸구려 일꾼” “파업 휘방꾼” 등으로 불리며 경멸과 불신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결혼이나 귀화를 통해 프랑스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이처럼 이민자를 동화시켜 국민을 형성한다는 사실은 프랑스 공화주의 모형의 불안정성을 나타낸다. 동화모형은 ‘프랑스 국민이 된 이민자들이 그 고유의 민족적·문화적 속성을 버리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Castles and Miller, 2009), 2005년 ‘이민자 청년 소요사태’에서 보듯이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프랑스는 경제 재건을 위해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구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에서 이주노동자를 대량 충원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이 끝날 때까지만 머무르겠다는 생각으로 프랑스에 들어왔지만, 일손이 부족했던 프랑스는 그들에게 영주권을 주며 정착하도록 만들었다. 당시 프랑스는 “영광의 30년”이라 불릴 정도로 경제 호황을 누렸고, 노동력 부족 해소 대책으로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구 식민지 출신 이민자를 정착민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 결과, 현재 프랑스 내 이민자의 상당수는 구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 출신이고, 그중 알제리인이 가장 다수를 차지한다. 그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도이기도 하다. 이민자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정비된 프랑스에서 많은 자녀를 낳았을 뿐 아니라, 신규 이민자도 계속 유입되었기 때문에, 프랑스 내 이민자 수는 급증하였다.

프랑스 사회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존의 원리’로 톨레랑스(tolérance,

寬容)를 강조해왔다. 톨레랑스 정신은 한 사회의 정신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체념과 무관심의 다른 표현일 때도 많다. 어쨌든, 이슬람교도 이민자들이 프랑스 사회에 대거 몰려오기 시작한 1950-1960년대에 이슬람 문화는 톨레랑스를 높이 외치는 프랑스 사회와 대립적이지 않았다. 이슬람교도 주민들은 ‘가정’과 같은 ‘사적 영역’에 주로 머물렀고, 그들의 종교 생활 양식은 프랑스인이 가톨릭을 믿는 방식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 정부는 그들이 집회를 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등 상당히 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김정희, 2004: 188). 그러나 이슬람교도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들은 소수민족집단 거주지를 형성하였고, 또 이슬람 문화를 공적 생활 영역에서까지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면서 프랑스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갈등이 생겨났다.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대혁명 이후 만들어진 ‘라이시테’(laïcité), 즉 정교분리원칙(政教分離原則)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이슬람교도 여성의 머리 스카프인 ‘히잡’(hijab),⁴⁾ 유대인들의 조그마한 파리 모양의 테 없는 모자인 ‘키파’(kippah), 기독교도들의 ‘십자가’ 등, 특정 종교적 상징물의 착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민자가 프랑스 사회에 거주하는 이상, 프랑스 사회에서 추구하는 기본 이념을 따라야 한다.”라는 강력한 동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단 프랑스인이 되면, 인종·종교·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프랑스 사회의 원칙이다. 이민자는 프랑스어를 익혀야 하고, 프랑스를 통해 의사소통해야 한다(최애영, 2004). 이민자의 자녀는 초등학교부터 프랑스어를 배워야 하고, 프랑스어를 통해 다른 과목을 배워야 한다. 프랑스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이민자의 아이들은 특수반에서 집중적으로 프랑스어를 배운다. 프랑스 정부는 공립학교에서 외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공화국에서는 인종·종교·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하고, 공립학교에서 이런 원칙에 예외는 없다. 이슬람 문화에서 여성은 ‘이슬람 스카프’로 머리를 가린다. 이슬람교를 믿는 부모의 관점에서 여자아이가 ‘이슬람 스카프’를 착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러한 종교적 복장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4) 1989년 프랑스 파리 교외의 한 중학교에서 이슬람 여학생 세 명의 퇴학을 결정했다. 그 이유는 그 여학생들이 차도르(chador)를 계속 쓰겠다고 고집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전 매스컴에서는 대대적인 토론이 벌어지고 공방이 오갔다. 이를 프랑스에서는 스카프(foulard) 또는 이슬람 베일(voile islamique) 사건이라 부른다. 이슬람 여성들이 사용하는 베일은 출신 지역이나 종교성향·계층·연령·취향에 따라, 머리와 목을 가리는 두건 모양의 ‘히잡’, 이런 여성들이 흔히 사용하는 ‘차도르’, 온몸을 뒤덮는 ‘부르카’(burka)까지 다양하다(오영주, 2004: 26-27).

공립학교는 건전한 시민을 평등하게 육성하는 곳이어서, 이슬람교도만이 종교적 특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공립학교 내 눈에 띄는 종교적 상징 착용 금지 원칙’을 강력히 견지하고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이민자들에게 프랑스어와 기술을 가르쳐주고 프랑스 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역시 이민자들이 프랑스 국민으로 쉽게 동화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에서 이민자에게 장기간에 걸친 문화적·민족적 다양성을 제공하는 정책은 발견되지 않는다. 프랑스의 공화주의 동화모형은 프랑스는 일시적으로 다민족 사회이지만 영원히 다문화사회로 존속해 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공화주의 모형에 입각한 프랑스에서 인종차별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프랑스는 이민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노령연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합법적 체류허가·취업허가를 받은 이민자는 그가 외국인일지라도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정상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가족수당까지 신청할 수 있고, 내국인과 똑같이 외국인도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사회보호에 입각한 공공부조제도가 사회보험제도에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은 사회보험제도이지만, 사회 최하층과 소수자들은 솔리다리테(solidarité, 連帶性) 원리에 따라 공공부조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문경자, 2004: 40-41). 그 결과, 합법 체류 외국인은 프랑스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 차별이 만연한 것도 사실이다. 이민자의 실업률이 원적(原籍) 프랑스인의 실업률보다 훨씬 높은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200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8일까지 프랑스 전역 274개 방리유(banlieues)에서⁵⁾ 발생한 ‘이민자 청년 소요 사태’의 근저에는 ‘차별·불평등’과 ‘사회적 배제’가 존재한다(박단, 2006; 이기라 외, 2007; 이정옥, 2010). 이는 자유·평등·박애의 공화국 이념 중의 하나인 ‘평등’을 위배한 것이다.

2005년 ‘이민자 청년 소요사태’ 이후 프랑스에서는 ‘동화’보다는 ‘통합’이라는 용어가 더욱 적합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도 했다. 1980년대 초 프랑수아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대통령이 강령으로 ‘차이를 가질 권리’를 내세우며 ‘지방의 정체성 확립’

5) 방리유는 대도시 외곽의 획일화된 주거공간을 가진, 대규모 인구를 위한 밀집형 거주지역이다. 아파트의 가격이나 월세가 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열악한 실업자·이민자·불법체류자가 모여들어 집단 주거지역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계토화된 ‘내부 식민지’라 불린다(이정옥, 2010: 332).

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후, 그 영역을 ‘프랑스 내 다양한 종교·민족 공동체 문화의 인정’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용광로’ 형태의 단일문화를 지향해왔던 프랑스가 ‘모자이크’ 형태의 복합문화 창출로 변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공화국 차원의 ‘통합’은 프랑스 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복종을 바탕으로 차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비종교성의 원칙’을 표방하는 공립학교에서 이슬람교도 여학생의 부르카 착용 불허 결정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김정희, 2004: 176-177 참조). 그러한 점에서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정책은 ‘공화주의 동화모형’의 전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설동훈, 2000; 송태수, 2006; 엄한진, 2009 참조).

Ⅲ. 이민 현황

1. 프랑스의 이민 수용 역사

프랑스 사회에서 이민은 매우 오랜 역사가 있다. 이미 18세기와 19세기에 출산율 저하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었던 프랑스는 정부가 주도하여 외국 출신 노동자들을 받아들였다. 특히 세계 경제 대공황과 양차 세계대전, 전후 부흥과 석유 위기에 따른 경제 위축이 교차한 20세기 프랑스의 이민 수용 역사는 다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은재호, 2005: 18).

제1기(1920-1935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허덕이던 프랑스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규모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 유럽 국가들과의 협약을 통하여 이민을 유치한 이 시기의 프랑스는 이민 수용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를 기록하였다. 인구 대비 이민자 비율로는 세계 1위였다. 프랑스가 정치 망명객의 천국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도 이때였다.

제2기(1936-1973년): 1930년대 세계경제공황으로 말미암아 잠시 주춤했던 이민자 비율은 1936년에서 1939년 사이에 스페인 내전으로 인한 망명자들이 대거 프랑스 내로 유입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다시 올라갔지만, 전쟁이 끝나면서 그들의 대부분이 본국으로 귀환함에 따라 다시 감소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을 기점으로 이민자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1956년에서 1973년 사이에 정점에 달했다. 이 시기에는 특히 기업주들의 요구에 따라 이민자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이민 장려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1962년에는 이민자 수가 300만에 달하여 1931년의 최대 기록을 경신하였다.

제3기(1974년 이후): 1970년대에 접어들어 뚜렷하게 드러난 성장세 감소와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프랑스 정부는 1974년 7월을 기점으로 이민자 총원 중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정치 망명과 기업주의 필요에 따른 이민자 외에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이후로도 꾸준히 이민이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1975년 이후에는 기존 이민자들의 가족이 결합하는 ‘가족 재결합 이민’(이하 가족이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 프랑스의 이민자 규모와 구성

2010년 1월 기준 프랑스 체류 외국인 수는 총 64,716,310명으로 총인구의 5.8%였다. 외국인 체류자 중,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은 35%이고, 제3국 출신은 65%이다. 2007년 프랑스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외국인 체류자 중에서 포르투갈 출신이 490,4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알제리(475,294명), 모로코(451,926명) 출신이 그 뒤를 이었다(French National Contact Point of the European Migration Network, 2011: 18).

총 영주 이민 유입량(Total permanent migration flows)은 1997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6년 48,410명, 1997년 74,455명, 1998년 110,728명으로 증가하였다. 1999년 82,753명으로 다시 감소하였으나, 그 후 2004년까지 141,561명으로 매년 증가하였다(Kofman, Rogoz and Lévy, 2010: 11). 영주 거주를 위해 발급되는 대부분의 비자 및 허가의 62%가 아프리카 출신에게 발급되었다. 특히 북아프리카(특히, 알제리와 모로코)의 출신자가 34%를 차지한다. 아시아 나라 출신자가 18%로 두 번째를 차지한다. 신규 발급 단기 취업허가(계절노동자 취업허가 제외)의 2/3는 ‘기타 이민’ 범주로 이미 프랑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OECD (2011: 281) 통계가 보여주듯 프랑스로 들어오는 이민자 수는 다시 감소 추세에 있다. 2009년 프랑스로 신규 유입된 총 영주 이민 건수는 약 126,000건으로 2008년도에 비해 7% 감소하였다. 그 중 ‘가족이민’ 건수는 78,100건으로 전년도보다 10% 줄어들었다. 감소 추세를 보이는 원인 중 하나는 경제위기로 인해 외국인 고용이 줄어들었고, 2007년 이후 가족 재결합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난민·망명자 또한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0년 48,000명 이상이 망명 신청을 했으

〈표 1〉 프랑스의 이민 현황, 2000-2009년

이민 유형(migration flows; 외국인) 나라별 정의(주민 천명당 인원)	2000	2005	2008	2009	평균		단위(천명)
					2000-2004	2005-2009	2009
이입	1.6	2.2	2.2	2.0	2.0	2.1	126.2
이출	..	..	..	..	..	..	..
				(단위: 천명)			
				(단위: %)			
유형별 이입(외국인)	2008	2009	2008	2009	이입자 출신국 중 상위 10개		
허가 기준 통계치(표준화)					전체 이입자 중 %		
취업	23.1	22.5	12.0	12.6	2000-2008 연평균		
가족(가족동반 포함)	85.3	76.6	44.4	42.8	2009		
인도적 기준	11.4	10.4	6.0	5.8			
자유이동	58.5	54.0	30.4	30.2			
기타	13.9	15.3	7.2	8.6			
전체	192.2	178.7	100.0	100.0			
				평균			
단기 이민(단위: 천명)	2005	2008	2009	2005-2009			
유학생	46.2	49.7	50.7	47.4			
연수생	0.6	0.6	0.6	0.6			
워킹 홀리데이	..	..	..	..			
계절 근로자	16.2	11.6	8.0	14.4			
기업 내 전근자	1.0	1.1	0.7	1.0			
기타 단기 취업자	6.5	5.2	3.5	5.4			
				평균			
난민 신청자 유입(주민 천명당 인원)	2000	2005	2008	2009	2000-2004	2005-2009	2009
	0.7	0.8	0.6	0.7	0.9	0.6	42 118
				평균			
인구 증가의 구성 요소(주민 천명당 인원)	2000	2005	2008	2009	2000-2004	2005-2009	2009
전체	6.9	7.1	5.4	5.2	7.0	5.9	324
자연 증가	4.1	4.0	4.2	4.1	3.9	4.2	254
순 인구이동	1.2	1.6	1.2	1.1	1.5	1.3	70
				평균			
이민 저량(stocks of immigrants; 총 인구 중 %)	2000	2005	2008	2009	2000-2004	2005-2009	2009
외국 출생 인구	..	..	..	..	..	..	..
외국인 인구	..	..	..	..	..	..	..
				평균			
귀화(외국인 인구 중 %)	2000	2005	2008	2009	2000-2004	2005-2009	2009
	..	..	..	..	..	..	135 842
				평균			
노동시장 성과	2000	2005	2008	2009	2000-2004	2005-2009	
고용률(%)							
자국 출생 남성	69.8	69.6	70.5	68.6	70.2	69.3	
외국 출생 남성	66.7	67.1	68.8	65.0	66.6	66.9	
자국 출생 여성	56.6	59.9	62.1	61.2	58.1	60.9	
외국 출생 여성	45.6	48.2	52.3	50.5	47.4	50.0	
실업률(%)							
자국 출생 남성	7.7	7.5	6.4	8.4	7.1	7.5	
외국 출생 남성	14.5	12.5	11.5	15.3	13.6	13.1	
자국 출생 여성	11.3	9.0	7.8	9.1	9.8	8.6	
외국 출생 여성	19.7	16.8	12.8	14.9	16.7	15.3	
				평균			
거시경제지표	2000	2005	2008	2009	2000-2004	2005-2009	2009
실질GDP(연평균 증가율 %; 미국 달러)	3.9	1.9	0.2	-2.6	2.1	0.8	
1인당GDP(연평균 증가율 %; 미국 달러)	3.2	1.1	-0.3	-3.2	1.4	0.2	26 391
취업자 수(연평균 증가율 %; 천명)	2.7	0.7	1.4	-0.9	1.0	0.7	25 696
실업률(노동력 중 %)	8.6	8.9	7.4	9.1	8.3	8.4	

자료: OECD (2011: 281).

며, 그것은 전년 대비 14% 이상 증가하였다. 신청자의 10% 정도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출신이다. 콩고민주공화국, 러시아, 스리랑카, 중국 등에서 온 사람도 있다. 2010년 약 15,000명이 프랑스에서 비호(asylum)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IV. 이민정책

1. 이민정책 기초

프랑스 이민정책의 기초는 ‘선별 이민과 고급인력 충원’, ‘강력한 이민통제 정책’, ‘적극적 통합정책’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선별 이민과 고급인력 충원: 프랑스는 1974년 이래로 이민자 유입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하는 정책 기초를 보인다. 특히 2003년부터 ‘선별 이민’의 핵심으로 비숙련 노동자보다 고급인력을 중심으로 한 이민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취업이민의 경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을 중심으로 이민을 허용하고 있다.

(2) 강력한 이민통제 정책: 2005년 니콜라 사르코지가 내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엄격한 통제와 강제퇴거를 시행하였다. 우파정부는 프랑스의 정체성과 종교·인종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 강력한 이민통제 정책을 폈다. 2011년 8월 클로드 게앙(Claude Gueant) ‘내무·해외영토·지방자치단체부’ 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국외추방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2년 집권한 사회당 정부는 이민자의 인권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려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기초는 유지하고 있다.

(3) 적극적 통합정책: 프랑스의 통합정책은 ‘공화주의 원칙’을 따른다. 2005년 프랑스 주류사회에 통합되지 못한 ‘이민자 청년 소요사태’를 겪은 후, 프랑스 정부는 이민자 통합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이민법

2011년 6월 16일 발효된 개정이민법(*la loi no 2011-672 du 16 juin 2011 relative a l'immigration, a l'integration et a la nationalite*)이 이민 행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며, 이를 바탕으로 2011년 9월 6일 발표된 이민법 시행령(*le decret no 2011-1049*

〈표 1〉 프랑스 이민법의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제1장 일반 규정	이민법의 일반적인 규정 개관
제2장 프랑스 입국	외국인의 출입국관리 원칙
제3장 프랑스 거주	체류증 제도 설명, 체류증 발급 절차
제4장 가족결합	외국인의 가족결합 요건, 가족결합 신청 방법, 동반가족 체류증
제5장 격리수단	국외추방, 기타 프랑스 사회로부터 외국인 격리 규정
제6장 제재	출입국 제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사항
제7장 난민	난민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난민 인정절차, 난민보고 기관
제8장 기타	외국인 유치, 외국인보호소 등에 관한 규정

자료: 김환학·오정은·최서리·한태희·이승복·박가영·신예진,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IOM이민정책연구원, 2012. p. 56.

du septembre 2011)은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체류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되고 있다. 프랑스의 이민법은 ‘외국인 입국·체류·망명에 관한 법률’(*le Code d’entree et du Sejour des etrangers et du droit d’asile: CESEDA*)을 기본법으로 하여 두 개의 행정령(*decret no 2011-891 du juillet 2011; decret no 2011-820 du 8 juillet 2011*)과 장관 시행공문(*circulaire du 17 juin 2011*)이 이민법을 보완하고 있다. 법 조항에는 외국인 체류 규정, 서류미비 이민자 통제, 강제출국명령, 외국인 구속에 있어 법적 분쟁문제, 중환자 입국 제한, 위장결혼에 대한 처벌, 서류미비 외국인 고용에 따른 고용주 처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민법시행령은 외국인을 체류 목적별로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과 외국인 본인과 가족 체류증 발급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프랑스령이지만 이민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을 적시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프랑스에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동법규 등이 명시되어 있다(김환학 외, 2012: 55-56).

3. 이민정책의 주요 내용

프랑스 이민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인종별 통계’를 산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프랑스인들이 이미 많은 종족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국민이라는 점, 16세기부터 국적법의 원칙으로 출생지주의(*Jus soli; right of the soil*)가 정착하여 이미 외국인이 정착하여 생활하는 것이 사회 풍토로 자리 잡았다는 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즘이 표방한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이 존재한다

는 점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는 부모의 국적, 출생지, 성(family name) 등을 통해 이민자들을 식별하고 있다(홍기원, 2010, 2012 참조). 프랑스의 이민정책은 크게 ‘이민자’(신규 이민자와 그 자녀)와 ‘프랑스 사회구성원 전체’의 둘로 대상을 구분한다.

1) ‘이민자’ 대상 정책

(1) 신규 이민자: 프랑스는 2003년부터 이주민에게 자국의 제도와 가치 등에 관한 교육, 언어교육 등을 받을 의무가 있음을 서약하게 하는 ‘환영·통합계약’(contrat d'accueil et d'integration: CAI)을 부분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계약은 이민자가 프랑스의 사회적 규범과 가치, 언어뿐만 아니라, 남녀평등, 세속주의(정교분리원칙)와 같은 공화주의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이다. ‘환영·통합계약’ 서약 제도는 2003년 4월 10일 전국 12개 도(département)에서 시행되었고, 2004년에는 14개 도로 확대되었으며, 2005년 1월 18일부터는 프랑스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2007년 11월 20일에 발효된 ‘이민·통합·난민·가족이민에 관한 법률’(*L'immigration familiale a, quant à elle, été encadrée de façon à mieux permettre l'intégration dans la société des membres de famille étrangers*, par la loi 2007-1631 du 20 novembre 2007)은 ‘이민자의 통합 책임’(integration responsibilities of immigrants)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다. 즉,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무료이지만 의무(obligation)사항이다. 프랑스는 신규 이민자에게 ① 프랑스 국민정체성과 프랑스에서의 생활에 대해 교육하고, ② 이민자의 직업능력이나 사회경제적 수준 등 사회적 역량을 평가하며, ③ 가족 재결합에 따른 이민인지 구별하고, ④ 건강검진을 하며, ⑤ 언어교육(총 교육시간 400시간), ⑥ 민법 교육을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은 연간 7,000만 유로에 달한다.⁶⁾

체류증 또는 거주증을 신청하기 이전에 이민자는 프랑스 사회에 자신이 ‘잘 통합되어 있음’(well-integrated)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합은 이민자가 프랑스 공화국의 기본 원칙들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고, 또 프랑스어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체류증 또는 거주증을 받은 이민자들은 프랑스인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부여 받는다(Kofman, Rogoz and Lévy, 2010: 22).

또한, 프랑스는 교육과 취업에서 기회의 평등 원칙을 추구하기 위하여 2006년 3

6)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 “프랑스 다문화(이민)정책,” 2012 6·1.

월 ‘기회평등법’(La loi pour l'égalité des chances; loi n° 2006-396 du 31 mars 2006)을 제정하고, ‘사회통합·기회평등을 위한 국가기구’(L'Agence nationale pour la cohésion sociale et l'égalité des chance: Acsé; www.lacse.fr)를 설립하여, 신규 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차별 철폐에 노력하고 있다. 기회평등법은 이민자의 실업률이 프랑스 국민에 비교해 높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청년 이민자들에게 수습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 연령을 14세로 하향 조정하여 이민자 자녀들이 조기에 취업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민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된다.

프랑스는 인종통계가 없으므로 ‘적극적 평등실현’(affirmative action) 정책이 없다. 그렇지만 경제적·사회적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해 지원한다. 프랑스 정부는 저개발 지역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고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목적으로 1996년에 ‘도시재활성화법’(La loi n°96-987 du 14 novembre 1996 relative à la mise en oeuvre du pacte de relance pour la ville)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근거하여, 프랑스 정부는 저개발지역 751개 지구(해당 인구 4백만 명)를 지정하여 ‘도시민감지역’(Zones Urbaines Sensibles: ZUS)이라 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다(정인철·배미애, 2007). 그 지역들은 대체로 이민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 해당한다(OECD, 2010: 173 참조).⁷⁾ 프랑스는 미국식 게토(ghetto)화 방지에 역점을 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 주택 제공,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학교’(ecole)를 중심으로 한 지원이 많다. 저개발지역의 주요 특징은 이민자 자녀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파리 북동부에 있는 교외 빈민가인 센느 생드니(Seine Saint Denis) 지역의 경우 주민의 60%가 이민자다. 프랑스인 없이 이민자 자녀로만 구성된 학교 등, 이민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의 학교에서 프랑스식 모델을 적용하여 통합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이민자 학생의 부모는 노동자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프랑스 정부는 유치원(6-7세), 초등학교 등 어린 학생들에 대해 읽기·쓰기 교육을 중시한다. 이민자 자녀의 35%가 직업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는 이민자의 경제적 불균형이 사회적 불균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 중이다. 예컨대, 학교 수업시간 중 부모들에게도 프랑스어 학습을 같이하거나, 주중 기숙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7) 프랑스 정부는 이 지역이 이민자 밀집 거주지역이기 때문에 선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2) 이민자 자녀: 이민자 자녀 정책은 크게 지원(soutien)과 제재(sanction)의 두 측면이 있다. 이민자 자녀의 어려움 극복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차별을 금지한다. 승진 상 불이익, 주택임주 시 거부 등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차별방지 고등위원회’와 ‘인권옹호관’(defenseur des droits)을 설치하였다.

이주 아동·청소년의 프랑스 사회로의 적응과 동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공교육제도에서 평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은 의무·무상 교육의 프랑스 교육제도 아래에서 프랑스인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는다.

동시에, 프랑스 정부는 사회적으로 혜택받지 못하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우선교육지구’(Zone d’éducation prioritaire: ZEP)를 마련하여 교육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높은 중퇴율, 높은 외국인 인구비율, 높은 실업률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인구들이 집중해서 거주하는 지역을 ‘우선교육지구’로 선정하여, 그 지역 공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모든 지식 습득의 기본이 되는 언어 습득 및 숙달에 교육에 초점을 두고, 그것에 대해 지원을 제공한다. 만 3세부터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며 조기교육을 장려한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아동들을 위해 교사교육, 보충수업, 상급학교 방문, 안내 책자 배부 등 상급학교로의 진학 지원을 제공한다. 우선교육망을 설치, 우선교육의 실행 경험과 방법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이를 위한 학군별 자료관을 설치 담당자들을 지원한다.

1965년부터 1984년까지 프랑스 전국에 ‘이민자 자녀 학교적응을 위한 정보센터’(Centres de formation et d’information pour la scolarisation des enfants de migrants: CEFISEM)를 설치하여, 초등학교 내에는 통합반, 중학교 과정에는 적응반을 설치·운영하였다. 그것은 2002년 ‘이민자와 비정착 주민들의 학교적응을 위한 교육센터’(Centre académique pour la scolarisation des nouveaux arrivants et des enfants du voyage: Casnav)로 대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사회구성원 전체’ 대상 정책

프랑스의 이민정책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 정책의 한 부분이다. 그것은 모든 이민자는 프랑스 국민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민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문화 다양성 인정과 공화주의(남녀평등과 세속주의)를 강조한다.

첫째, 프랑스 정부는 이민자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민의 역사를 대중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예로, 이민사 박물관을 설립하였고, 2006년부터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미디어별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프로그램이 일정 비율 배정

되도록 감독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노예제도, 식민주의 등 사회적 쟁점을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이민 사회’에 대한 내용을 12-13세 대상 교과과정에서 반영하였다.

또한, 프랑스는 공화주의를 표방하며 남녀평등과 세속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남녀평등’ 원칙에 의거하여, 여학생이 남녀합반을 거부한다거나, 여학생이 체육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가 개입하여 그것을 단속할 수 있다. ‘부르카 착용 금지’의 경우, 부르카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저해하는 표식이라는 점을 들어 정당화한다. ‘세속주의’ 원칙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어떤 종교적 표식도 부착할 수 없다. 프랑스는 매우 폭력적인 종교전쟁을 겪은 나라인 데다가, 가톨릭 국가 중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세속주의 존중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가치다. 최근 이민자 중 이슬람 인구가 많아지면서,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종교 간 평등은 인정하여 이슬람사원 수가 20년 동안 500개에서 2천 개로 증가하였고, 병원과 군에서 이슬람 사제가 있으며 이슬람 종교위원회 등을 인정한다. 다만, 이슬람 근본주의를 상징하는 표식을 한다거나, 이로 인해 사회 긴장이 조성되는 경우 국가가 개입하여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평등을 더욱 중시한다. 이것이 프랑스와 미국의 가장 큰 차이다. 미국에서는 극단주의자나 인종차별주의자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프랑스는 이와 다르다. 프랑스대혁명 이래 평등과 통합이 매우 중요한 정치철학이 되어, 프랑스인들은 이러한 철학에 강한 애착이 있다.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고, 나치주의 정당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V. 이민 행정 조직과 이민정책 추진체계

이민 행정 조직과 그 임무를 정책총괄, 정책집행, 정책조정의 세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민정책 추진체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정책수립기관으로는 내무부, 노동·사회관계·가족·연대·도시부, 법무부가 있고, 정책집행기관으로는 이민·통합청, 난민·무국적자보호사무소, 정책조정기관으로는 ‘이민 관리를 위한 부처 간 위원회’ 등이 있다.

1. 정책총괄

1) 내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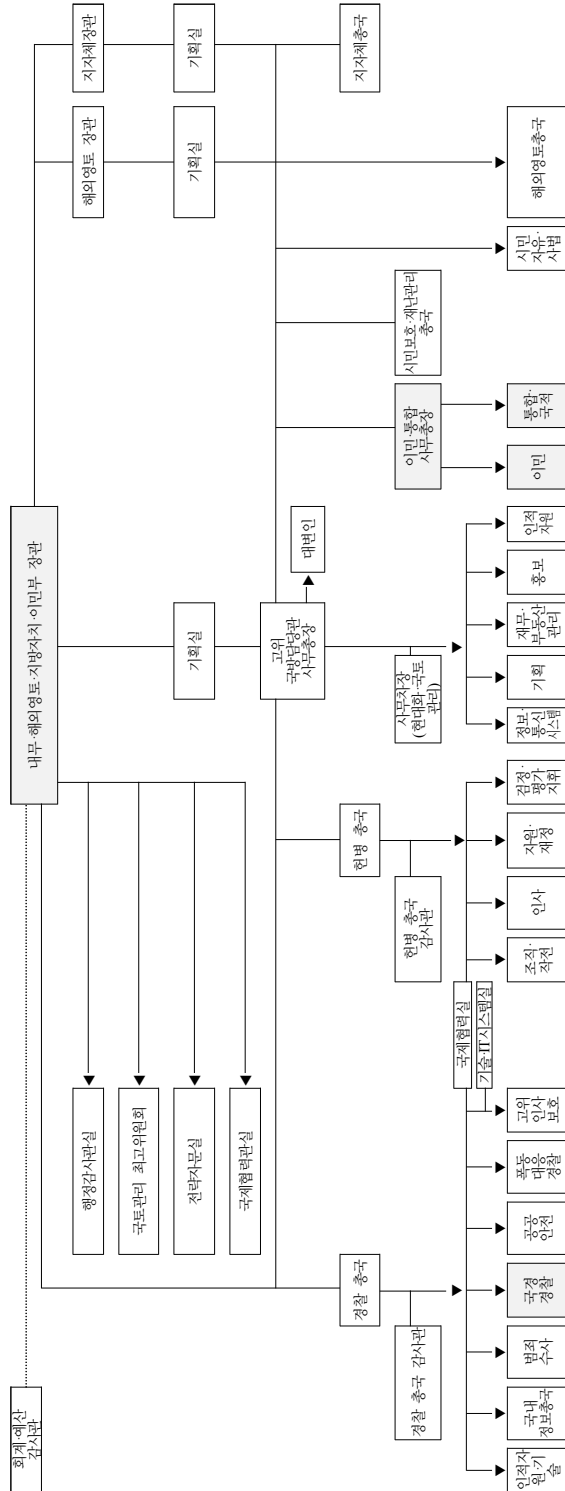
2007년 사르코지 대통령과 프랑수아 피용(Francois Fillon) 국무총리 정부는 이민 통제를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정부 내에 ‘이민·통합·국민정체성·공동발전부’(Ministere de l’immigration, de l’integration, de l’identite nationale et du developpement solidaire)를 신설했다. 당시 정부는 ‘이민·통합·국민정체성·공동발전부’로써 20년간 내무부, 외무부, 사회부, 법무부 등에서 각기 다른 관점에서 진행되어 온 이민정책을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하여 다루려 시도하였다. 그 당시 ‘이민·통합·국민정체성·공동발전부’의 중점 목표는 ① 이민의 관리 및 통제, ② 통합 장려, ③ 프랑스 국민정체성 증진, ④ 공동발전의 촉진 등이었다.

2010년 11월 14일 구성된 제2기 사르코지 정부는 2007년 5월 16일에 만들어진 ‘이민·통합·국민정체성·공동발전부’를 ‘내무·해외영토·지방자치단체부’(Ministere de l’Interieur, de l’Outre-mer et des collectivites territoriales)와 통합하여 ‘내무·해외영토·지방자치단체·이민부’(Ministere de l’Interieur, de l’Outre-mer, des collectivites territoriales et de l’Immigration) 소속으로 재배치하였다(그림 1 참조).⁸⁾ ‘내무·해외영토·지방자치단체·이민부’는 프랑스 국내 행정 및 시민 및 자산의 안전을 포함한 전통적인 소관에 따라, 내무부는 국가경찰력을 포함한 질서 유지에 관한 작전 지휘권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민 상황 조정 정책에 따라 불법이민자를 근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경보호의 업무도 담당한다. 그 뿐 아니라, 과거 ‘이민·통합·국민정체성·공동발전부’가 맡았던 이민상황 관리, 이민 송출 국가들과의 공동발전 모색, 프랑스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통합 촉진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이민·통합 사무총장’(Secretariat General a l’Immigration et a l’Integration: www.immigration.gouv.fr) 이 ‘이민’과 ‘사회통합·국적’ 업무를 맡고, ‘통합을 위한 부처 간 위원회 사무총장’은 타 부처와의 업무 조정 임무를 수행한다.

2012년 5월 집권한 사회당의 올랑드 대통령은 ‘내무·해외영토·지방자치·이민부’를 ‘내무부’(Ministere de l’Interieur)로 조직을 개편하였다(그림 2 참조). 2013년 현재 내무부는 프랑스 이민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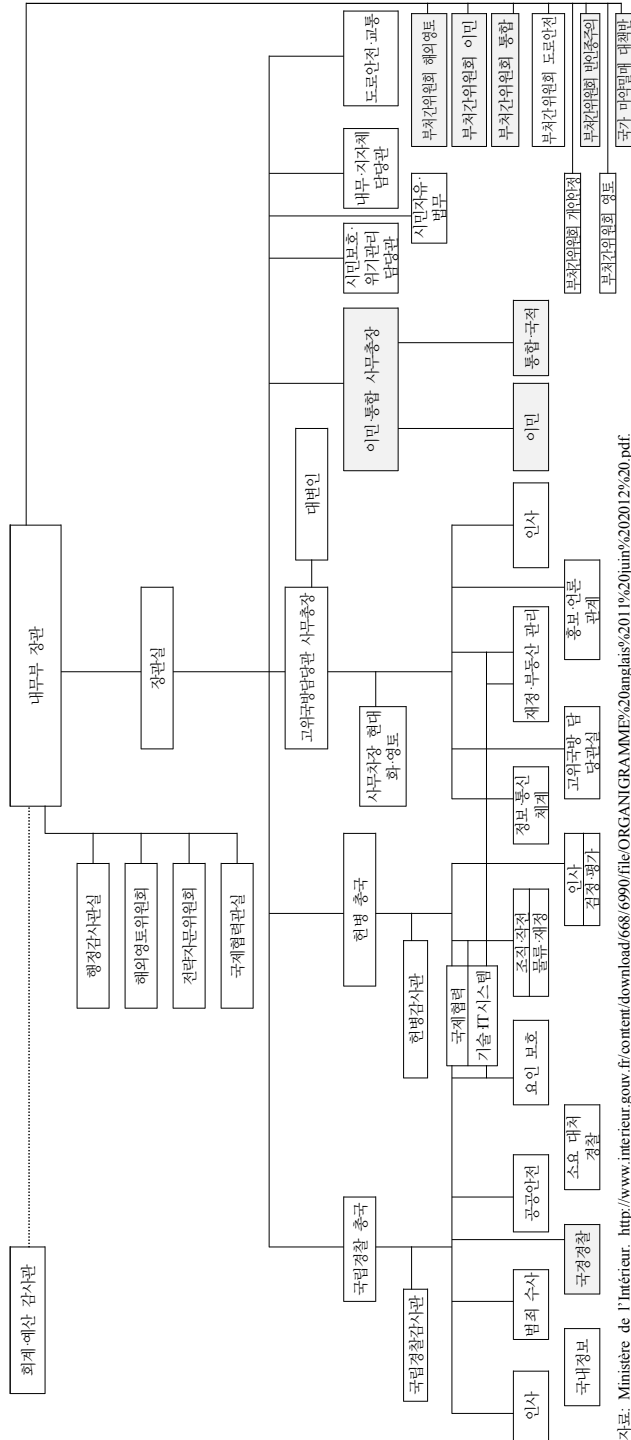
8) ‘이민·통합·국민정체성·공동발전부’ 시기에는 이민자의 사회통합보다는 불법체류자의 검거 및 추방을 목적으로 하는 통제의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집행했지만, ‘내무·해외영토·지방자치·이민부’ 또는 ‘내무부’에서는 이민자 통합과 통제를 모두 추구하는 형태로 강조점이 바뀌었다.

〈그림 1〉 사르코지 정부 '내무·해외영토·지방자치·이민부' 행정 조직도, 2010-2012년



자료: Ministère de l'Intérieur, de l'Outre-mer,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de l'Immigration. <http://www.interieur.gouv.fr>.

〈그림 2〉 올란드 정부, 내무부, 행정 조직도, 2012년 이후



자료: Ministère de l'Intérieur. <http://www.interieur.gouv.fr/content/download/668/6990/file/ORGANIGRAMME%20anglais%2011%20juin%202012%20.pdf>.

<그림 2>에서 2012년 12월 기준 프랑스 내무부 조직을 보면, 차관급인 ‘이민·통합 사무총장’ 산하에 ‘이민’과 ‘통합·국적’을 각각 담당하는 두 개의 실이 있고, ‘국립경찰총국’ 산하에 ‘국경경찰’이 있다. 또한, 관계부처와 업무를 조정하는 기구로서 ‘부처 간 위원회 이민’과 ‘부처 간 위원회 통합’이 있다. 즉, 프랑스에서는 이민과 통합·국적의 두 부서를 내무부에 두고 있다.

2) 노동·사회관계·가족·연대·도시부

노동·사회관계·가족·연대·도시부(Ministere du Travail, des Relations sociales, de la Famille, de la Solidarite et de la Ville: 이하 노동부)는 내무부처럼 이민문제만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노동부 담당의 업무와 정책을 추진하는 중에 이민 관련 통계를 생산해 내거나 기존 통계를 활용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흥미로운 것은 내무부가 이민문제를 통계와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과는 달리, 노동부는 사회부문에서의 평등실현을 이념으로 한다. 한마디로, 이민자의 사회 적응에 정책적 관심이 있다. 이민문제와 관련해 노동부에서 수행한 조사연구나 통계자료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3)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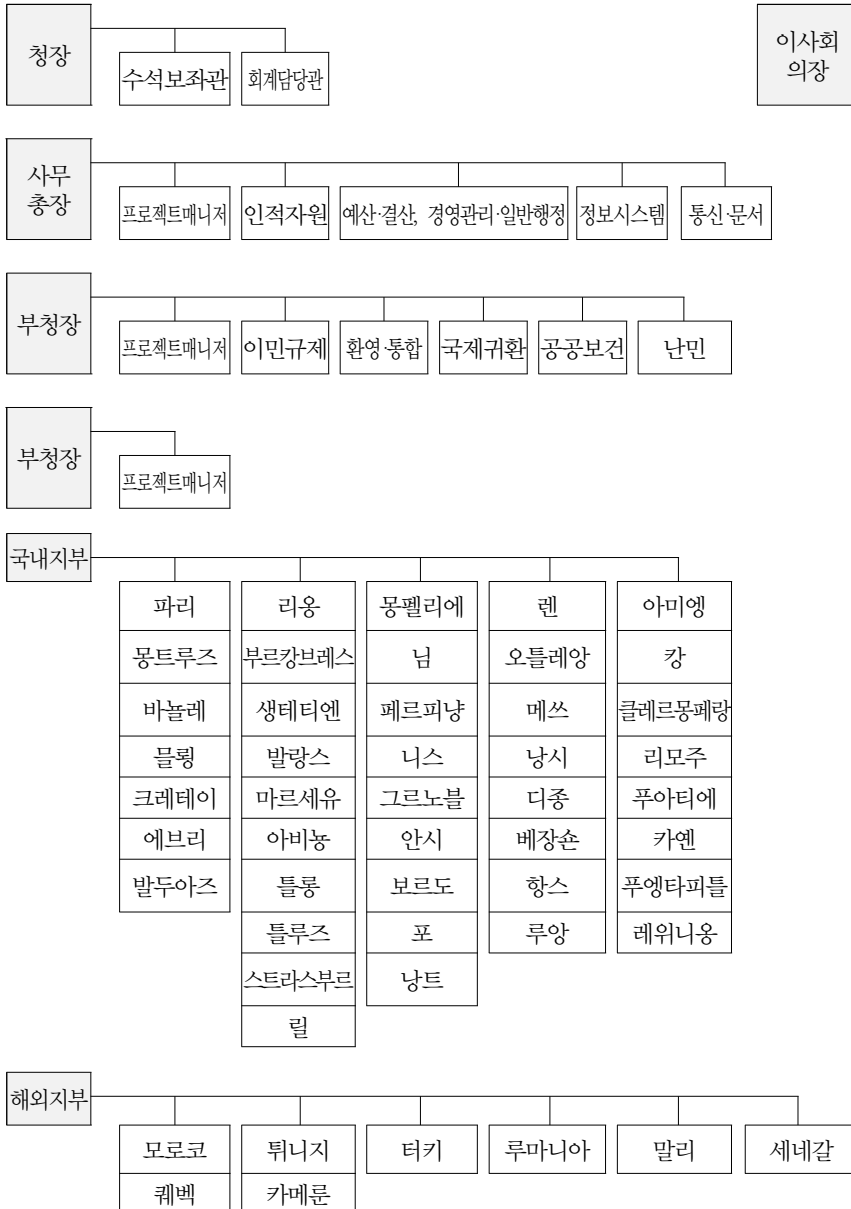
법무부(Ministère de la Justice)는 이민과 관련해서 직접 정책집행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이민 관련 통계를 생산해내지는 않지만, 국적취득과 관련한 인구학적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그것은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수준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2. 집행기관

1) 이민·통합청

이민·통합청(Office franç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egration: OFII)은 내무부 산하 외청으로 2009년 설립되었다. 파리의 중앙사무소와 전국 각지에 28개 지방사무소, 해외 8개국(모로코, 튀니지, 루마니아, 세네갈, 캐나다, 카메룬)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민·통합청은 이민자 통합문제를 담당하는 유일한 정부 기관으로, 기존 ‘외국인·이민자 안내기구’(Agence nationale de l'accueil des étrangers et des migrations: ANAEM)의 업무와 ‘사회통합·기회평등을 위한 국가기구’(Acsé)의

〈그림 3〉 프랑스 이민·통합청 조직도



자료: L'Office Franç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égration. 2010. *Rapport d'activités 2009 de l'Office Franç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égration*. Paris: L'Office Franç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égration. p. 88.

업무 중 일부분을 합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OFII의 주된 목적은 프랑스에 이주해 온 외국인들이 이주한 이후 최초 5년 동안 프랑스 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또한, 불법취업 근절, 난민·취업이민·가족이민을 관리한다.

OFII는 기존 취업이민 업무를 담당하던 ‘외국인·이민자 안내기구’의 업무를 흡수하여 프랑스 국내의 모든 합법 이민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고용주와 취업이민자 연결을 위한 안내서비스 및 가족 재결합 요청에 대해 시청이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의 수입과 주거상태를 감독하고 가족 재결합으로 프랑스에 입국한 가족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OFII가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을 자세히 살펴보면, OFII의 정책적 방향은 통합에 있다기보다는 통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통제정책과 관련지어 설명하면, 내무부는 불법체류자들을 주된 관리대상으로 하지만, OFII는 합법적 지위를 지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OFII에서 분류하는 합법적 지위를 지니는 외국인으로는 이민의 동기에 따라 ‘직업상 사유로 인한 이민’과 ‘가족 재결합을 위한 이민’으로 크게 나뉘며, 이외의 합법적 이주자로는 망명 신청자가 있다. OFII에서는 망명·난민신청자를 위한 안내조치(Dispositif National d'Accueil des Demandeurs d'Asile et des Refugies: DNA)의 시행 역시 담당한다.

2) 난민·무국적자보호사무소

‘난민·무국적자보호사무소’(Office français de Protection des Refugies et Apatrides: OFPRA)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을 시행하기 위해 1952년 7월 25일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행정적·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내무부의 산하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다른 부처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OFPRA의 목적은 난민을 보호하고 관련된 국제협약과 기타 국제협정 등을 적용하는 데에 있다. 또한, 국제협약 및 기타 국제협정, 유엔난민기구 등이 규정하는 난민과 망명자를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등 이들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기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 세 가지다.

- 난민 자격 부여: 난민 자격에 대한 제네바협정 제1조에 부합하거나 자유 수호를 행위로 인해 학대를 받았거나 UN난민기구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을 가진 자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한다.
- 부차적 보호권 제공: 난민자격요건에 부합되지는 않으나 본국에서 비인간적

인 취급이나 형벌, 고문, 사형 등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였음을 확증할 수 있는 자에게 부차적 보호권의 혜택을 제공한다.

- 법 적용의 보증: 난민과 부차적 보호권 수혜자에게 행정적·법률적으로 보호하며, 이는 외국 난민에 대해 국내법 적용의 감독과 국제법 적용이 보증됨을 말한다.

3. 부처 간 이민정책 조정기구

프랑스에는 부처 간 정책 조정기구로 ‘이민 관리를 위한 부처 간 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de contrôle de l’immigration)가 있다. ‘이민 관리를 위한 부처 간 위원회’는 이민정책조정 관련 업무를 위해 2005년 5월 6일 설립되었다. 총리 및 9개 부처 대표자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민, 난민보호 및 공동발전 관련 정책방향을 설정한다. 매년 위원회는 의회에 제출할 이민관련 정부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한다. 이 위원회의 간사 역할은 ‘통합을 위한 부처 간 위원회 사무총장’(Le secrétariat général du comité interministériel à l’intégration)이 수행한다(그림 2 참조).

VI. 결론

프랑스는 이민자를 개인 수준에서 사회에 통합하는 ‘공화주의’를 추구하는 사회다. 프랑스는 2세기에 걸친 이민의 역사를 지녔고, 그들을 자국 사회에 ‘동화’(assimilation)시키는 데 주력해왔다. 유럽에서 이민 수용의 역사가 가장 긴 프랑스의 ‘톨레랑스’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민자들의 출신국에 대한 논의는 가능한 한 금기시하고, 대신 그들에게 프랑스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줌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려 한다. 즉, 프랑스는 이민자들의 출신국에 따른 문화적 정체성 차이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이민자가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는 집단적 권리로서의 소수민족문화에 대한 인정에 근거를 둔 ‘다문화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나라로 평가된다.

1980년대부터 장기불황, 인종주의, 정주이민의 증가, 이민자들의 출신 국가·종족의 다양화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공화주의 통합모델이 한계에 봉착하였다는 인식에 도달하였고, 그에 따라 ‘통합’(integration) 논의가 등장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통

합' 개념이 그 전과는 다른 맥락에서 강조되었다. '통합'이 이민자들의 적응을 도와 주는 우호적인 조건을 마련해주는 의미를 지니기보다는, 불법 이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체류의 조건으로 부과되었기 때문이다(엄한진, 2009 참조). 그러한 상황은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 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이민자에 대한 통제의 강화와도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민정책이 통제의 방향으로만 강화된 것은 아니다. 2005년 '방리유 사건' 이후, 프랑스 정부는 이민자들을 실질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이민자의 현실에 주목하여 그들을 프랑스 사회의 정당한 일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권을 잡은 세력의 교체에 따라 이민정책의 성격이 바뀌고 이민행정조직도 개편되어 왔다. 프랑스 이민정책의 주무 부처 명칭과 업무의 변화는 그러한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르코지 정부의 이민정책 주무 부처 '이민·통합·국민정체성·공동발전부'와 '내무·해외영토·지방자치·이민부'는 상대적으로 통제를 중시하는 이민정책을 폈다면, 올랑드 정부의 '내무부'는 통제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통합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민정책 총괄기구'를 설치할 모색하는 한국이 참조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설동훈, 2013 참조). '이민정책 총괄기구'는 이민자에 대한 통제와 통합의 필요성이 동시에 강화될 때 비로소 만들어지고 그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다. 현 상황 한국에서는 '이민정책 총괄기구' 설립을 서두르기보다는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어 해결하는 데 정책적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정희. 2004. “모자이크 사회 — 통합과 균열: 이민자.” 서울대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 편,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럿』. 도서출판 강. pp. 167-188.
- 김환학·오정은·최서리·한태희·이승복·박가영·신예진. 2012.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IOM이민정책연구원.
- 문경자. 2004.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하여: 솔리다리테.” 서울대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 편,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럿』. 도서출판 강. pp. 31-44.
- 박단. 2006. “2005년 프랑스 ‘소요 사태’와 무슬림 이민자 통합문제.” 《프랑스사연구》 14: 225-261.

- 설동훈. 2000.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13. “이주민 정책 총괄기구 설치 관련 쟁점 및 과제.” 『이주민정책 총괄기구 설치방안』. 국회입법조사처. pp. 1-30.
- _____. 강기정·이병하. 2011.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제 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 _____. 이혜경·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송태수. 2006. “제노포비아 현상과 원인: 영국, 프랑스, 독일 비교연구.” 『유럽의 제노포비아』. 문화과학사. pp. 159-194.
- 엄한진. 2009. “프랑스 사회통합모델의 특수성과 다문화주의의 도전.” 《Homo Migrants》 1: 47-74.
- 오영주. 2004. “신의 왕국에서 인간의 사회로: 라이시테.” 서울대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 편,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럿』. 도서출판 강. pp. 11-30.
- 은재호. 2005. “프랑스 소요사태와 이민실태 분석.” 《정세와 정책》 2005년 12월호.
- 이기라·양창렬·이지선·김한창·강진희·손영우·신동규·이권능·에티엔 발리바르. 2007. 『공존의 기술: 방리유, 프랑스 공화주의의 이면』. 그린비.
- 이정욱. 2010. “프랑스 무슬림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프랑스문화연구》 21: 319-345.
- 정인철·배미애. 2007. “도시정책논리에 의한 사회공간적 배제: 프랑스 ZUS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2(1): 63-81.
- 최애영. 2004.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 하나의 언어: 프랑스어.” 서울대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 편,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럿』. 도서출판 강. pp. 189-205.
- 한경구·설동훈·이철우·이충훈·이혜경·정기선·한건수. 2012. 『해외 각국의 이민정책 추진 체계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홍기원. 2010. “프랑스의 이민관련 통계기관.” IOM이민정책연구원 위킹페이퍼 #2010-06.
- _____. 2012. “출입국관리 관련 통합법전 모델의 모색: UK와 프랑스의 이민법을 참고 하여.” 《법과 정책 연구》 12(1): 181-206.
- 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 2009. *The Age of Migration*, 4th Edition. New York: The Gulford Press.
- Freeman, Gary P. 2010. “Can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Be Both Liberal and Democratic?” *Society* 47(2): 102-106.
- French National Contact Point of the European Migration Network. 2011. *Annual Report on Migration and International Protection Statistics 2009*. Paris: Ministère de l’Intérieur, de l’Outre-mer,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de

l'Immigration.

- Hollifield, James F. 2000.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How Can We
"Bring the State Back In"?" pp. 183-237 in *Migration Theory: Talking Across
Disciplines*, edited by Caroline B. Brettell, Caroline B. Brettell, and James F.
Hollifield. London: Routledge.
- _____. 2004. "France: Republicanism and the Limits of Immigration Control." pp.
183-214 in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2nd Edition, edited
by Wayne A. Cornelius, Takeyuki Tsuda, Philip L. Martin, and James F.
Hollifield.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Kofman, Elenore, Madalina Rogoz, and Florence Lévy. 2010. *Family Migration Policies
in France*. Vienna: International Centre for Migration Policy Development.
- Moore, Molly. 2008. "In France, Prisons Filled with Muslims." *Washington Post*, April
29, 2008. p. A01.
- OECD. 2010. *Equal Opportunities: The Labour Market Integration of the Children of
Immigrants*.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_____. 2011.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SOPEMI 2011*.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3. 4. 29. 접수; 2013. 5. 15. 수정; 2013. 5. 31. 채택)

Immigration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System in France

Dong-Hoon Se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provide brief understanding of the immigration policy and the implementation system in France from the following four aspects. First, it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rench model as one of the reception and integration models of new migrants. Second, it also describes France's brief history of immigration since 20th century, and analyzes current immigration statistics. Third, after reviewing the policy bases and the legal foundations of immigration policy, this paper shows details of the immigration policies of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and 'all members of the French society' in France. Four, it analyzes immigrati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their duties by classifying them into three areas: (1) ministries of policy planning, implementation and coordination, (2) agencies of policy enforcement, and (3)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s among ministries. In conclusion, it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of immigration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system in France, and provides implications to Korea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Keyword: France, immigration policy, immigration law, immigration administration, implementation system

한국이민학회 정관

제 정: 2007년 2월 2일

1차 개정: 2009년 7월 1일

2차 개정: 2010년 6월 14일

3차 개정: 2013년 4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 (약칭: KIMSA)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국경을 넘는 인간의 이동에 따른 제반현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학술활동을 활성화하고 국제학술교류를 촉진하여 인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이민에 관한 연구
2. 국내 및 국제 학술발표회와 토론회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
4.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5. 기타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구분 및 자격)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회원 및 도서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개인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

의 자격을 갖추고 본 학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이민과 관련된 분야를 강의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중의 대학원생, 이민분야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이민분야에 관심을 가진 석사과정의 대학원생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이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학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 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본다.
- ③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 ④ 도서관회원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와 연구결과물을 구독하고자 하는 도서관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 ② 회원은 학회지를 무상으로 배부 받는다.
- ③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가 주관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학회의 목적과 명예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 ①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일을 하였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저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구분 및 임기)

- ①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4인 이내
 3. 총무이사 1인
 4. 편집이사 3인 이내
 5. 연구이사 3인 이내
 6. 감사 2인
 7. 기타 필요에 의해 이사로 선임되는 자.
-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이 전임회장의 유고로 승계한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승계한 잔여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 (회장의 선출과 명예회장의 추대)

- ①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차기 회장이 된다. 단, 제1차 투표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제1차 투표의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로 정한다.
- ② 단일후보의 경우에는 가부투표를 실시하며, 총회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선출된다.

제11조(기타 임원의 선출)

- ①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②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권한과 의무)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법인의 이사장 및 총회,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1개월 이내에 차기 회장이 회장의 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총무이사는 학회의 일반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예산 및 결산, 법인 등록 및 변경, 기타 다른 상임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④ 편집이사는 학회지 및 기타 연구간행물 발간을 담당한다.
- ⑤ 연구이사는 정기학술대회의 기획 및 개최, 기타 학술활동을 담당한다.

- ⑥ 감사는 학회의 예산·결산과 사업을 감독한다.

제4장 조직

제13조 (총회)

- ①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②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총회는 매년 정기학술대회일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정회원 20인 이상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과 감사의 선출
 3. 사업계획의 승인
 4. 결산의 승인
 5. 본 학회의 해산
 6. 기타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 ⑤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본 학회의 해산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4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제19조 제1항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②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
 2.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관의 개정안
 3.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정회원의 가입자격 인정
 4. 제8조에 의한 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5. 회원에 대한 포상
 6. 기타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안건의 심의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④ 이사회회의 의결은 출석한 임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실무이사회)

- ① 총회와 이사회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이사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회장이 선임하는 실무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③ 실무이사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④ 실무이사회는 학회 운영을 위한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결의를 집행해야 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⑤ 실무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기획한다.
 1.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
 2.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관의 개정안
 3. 회원의 회비
 4. 본 학회의 명의로 수행하는 연구수탁사업 등의 전체 사업금액 중 학회귀속분의 비율
 5.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실무이사회에서의 의결은 출석한 실무이사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편집위원회)

- ① 본 학회의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이사 중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연구회 및 연구자문위원회)

- ① 본 학회의 연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공 또는 연구주제별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회의 운영은 연구이사가 담당한다.

- ③ 연구이사 및 연구회의 연구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연구회와 연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재정

제18조 (재산)

- ①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 1. 회원이 납부한 회비
 - 2.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 3. 기부금 및 찬조금
 - 4. 사업에 따른 수입금
 - 5.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 6. 본 학회의 기금
 - 7. 기타 수입
- ② 제5조의 회원 구분에 따른 회비의 금액은 실무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9조 (재산의 관리)

- ① 본 학회 재산의 보존 및 관리는 회장이 관장한다.
- ② 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1. 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 2. 제4조 이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본 학회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또는 본 학회의 권리 포기하는 행위(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기채(起債) 또는 금전차입(상임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재정보고) 회장은 결산 등 본 학회의 재정내역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해산

제22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3조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국가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이민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정: 2010년 6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이민학》(이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학술지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들에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사람과 그 저작물, 그리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논문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우리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윤리규정

제4조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고 발표하는 모든 저자는 학회 정관에 천명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을 따라 독창적인 논문을 작성·투고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학회의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 ①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사회 상규에 반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여기서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자료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함).

- ② 전호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③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6조 (편집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의 편집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이나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만을 근거로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⑤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⑥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한 논문에 대해 특정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내용을 본 후 결정해야 한다.

제7조 (논문 심사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 심사를 위촉 받은 모든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① 모든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심사 의견을 편집위원회에 보내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곧바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높은 수준의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의 내용과 결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자신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 보내는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

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며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심사 의견을 작성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논문이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 ⑤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연구가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논문의 내용이 다른 논문과 같거나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논문 저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논문 저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 ② 논문이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을 경우 인터넷에서 논문 삭제
- ③ 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 ④ 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9조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 ②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으로부터 해촉 및 재위촉 영구 금지
- ③ 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 ④ 윤리규정을 위반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10조 (이의 신청) 당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학회는 이를 판단할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 중에서 5명으로 구성한다.

제12조 기타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따라 판단한다.

제13조 본 규정은 2010년 6월 14일자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제 정: 2008년 8월 1일

일부개정: 2010년 6월 14일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한국이민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회칙 제16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임기 및 선임)

- ① 편집위원장은 회장단의 협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학》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2. 《한국이민학》의 편집 및 출간
3.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5조 (운영)

- ① 본 위원회는 《한국이민학》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평가자를 선임·위촉하고 평가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②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 ③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⑤ 편집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한국이민학회 회장에게 청구한다.
- ⑥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 ⑦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편집간사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1조 이 내규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내규는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이민학》 발간지침

제 정: 2008년 8월 1일

일부개정: 2010년 6월 14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학》(*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국이민학》의 발간주기)

- ① 《한국이민학》은 연간 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한국이민학》의 발간번호는 제○권 제○호로 한다. 《한국이민학》의 발간연도에 따라 “제○권”의 숫자가 순서대로 부여되며, 같은 연도에 발행한 《한국이민학》의 순서에 따라 “제○호”가 부여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

- ① 한국이민학회 회칙 제16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가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맡는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및 20명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정관 제16조 제2항에 의거 편집이사 중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논문투고)

- ①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논문의 주제는 한국 및 세계의 이민 관련 이론적·경험적 연구여야 하며, 논문투고자의 자격은 회원으로 제한한다.
- ② 논문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제출된 논문은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현재 게재를 심의 중이어서는 안 된다. 단, 외국어로 작성되어 저명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로 번역하여 실을 수 있다.
- ③ 논문 제출 시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kimanet2007@gmail.com로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자메일로 송부한다. 투고신청서는 본 학회 홈

페이지(<http://www.kimnet.org>)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송부한다.

- ④ 제출된 논문은 오·탈자의 수정을 제외한 내용상의 편집과 수정을 하지 않고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논문투고자가 진다.
- ⑤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작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순서대로 기재한다. 두 사람 이상의 복수 저자일 경우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표기한다.
- ⑦ 기타 논문의 투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뢰)

- ①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부위원장 및 해당 전공의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논문의 원고를 해당분야의 편집위원에게 할당하고,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한다.
- ②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할당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실적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위원 중 3인을 선정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의 심사)

- ① 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게재가”, “부분수정”, “근본수정”, “게재불가” 중 하나의 심사결과와 관련 의견을 작성하여, 의뢰 받은 기간(통상 2주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분수정이라 함은 수정 후 게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하고, 근본수정이라 함은 수정 후 재심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한다.
- ② 위촉받은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자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논문의 체계와 완성도
2. 연구내용의 독창성과 창의성
3. 연구내용의 학술적·정책적 기여도
4. 연구방법의 적합성
5. 기타 편집위원회가 정한 사항

제8조 (논문게재의 판정)

① 논문게재의 판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가, 가, 가	가, 부분, 부분	가, 부분, 부	가, 부, 부
가, 가, 부분	가, 부분, 근본	가, 근본, 근본	부분, 부, 부
가, 가, 근본	부분, 부분, 부분	가, 근본, 부	근본, 부, 부
가, 가, 부	부분, 부분, 근본	부분, 부분, 부	부, 부, 부
		부분, 근본, 근본	
		부분, 근본, 부	
		근본, 근본, 근본	
		근본, 근본, 부	

※ 가: 게재가, 부분: 부분수정, 근본: 근본수정, 부: 게재불가

②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수정후게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정후게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② 수정·보완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재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재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동 규정은 여러분의 지적에 따라 삭제)

- ②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은 초심에서 부분수정, 근본수정 또는 부의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들에게 맡긴다.
- ③ 재심을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기간(통상 1주일) 이내에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의 재심 결과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④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 결과, 초심에서 “게재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의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평가한 경우에는 논문 게재를 확정한다.

제11조 (게재불가 판정 논문의 심사 재신청)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

- ① 논문투고자는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상세한 사유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 사유를 검토한 후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재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를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한다.
- ④ 재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5조 이하에 의거, 새로운 투고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원래 심사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제13조 (표절 지적의 처리)

- ① 편집위원회는 표절이란 의견이 제시되고 표절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사를 중단한다.
- ② 이때 편집위원회는 표절 지적 내용과 관련 자료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③ 논문투고자는 다툼이 해결되었음을 증빙하는 내용의 자료를 첨부하여 재투고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논문투고자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판권 등)

- ① 《한국이민학》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이민학회에 귀속한다.
- ② 논문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이민학》에 게재된 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제16조 (논문게재예정증명 등) 논문게재예정증명 또는 논문게재증명은 각각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또는 《한국이민학》이 발간된 후 논문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제17조 (보칙) 《한국이민학》의 발간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

원고 제출 및 게재

1. 《한국이민학》은 한국 및 세계 이민문제와 관련된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을 싣고 있다.
2. 《한국이민학》에 게재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가진 것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단, 국제 저명 학술지에 외국어로 발표된 논문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게재할 수 있다.
3. 《한국이민학》은 수시로 논문을 접수한다. 《한국이민학》에 투고를 원하는 사람은 원고를 워드프로세서(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한국이민학회 사무국’(kimanet2007@gmail.com)으로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자메일로 송부하여야 한다. 투고신청서는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kimanet.org>)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송부한다.
4. 제출원고는 한국어로 씌어진 것으로, 다음 원고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5. 접수된 논문은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6. 게재 결정 이후 투고자는 원고를 수정한 후, 최종원고를 담은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원고 작성지침

1. 원고 논문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A4 용지에 단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5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연구단편(research notes)은 1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원고는 국문으로 제목표지(논문제목·저자이름·요약문·핵심단어), 본문, 각주, 참고문헌, 표, 그림, 부록, 저자소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아울러, 영문으로 논문제목, 저자이름, 요약문(English Abstract), 핵심단어(Key Words)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5.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만 한자를 괄호 속에 함께 쓰도록 하고, 기타의 외래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원문 뒤에 괄호 속에 함께 쓴다.
6. 원고의 제목표지에는 논문의 제목, 저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저자가 두 사람 이상인 공동연구의 경우 중간점(·)을 사용하여 옆으로 나란히 기재한다. 감사의 글, 연구비 지원기관, 교신저자 등은 *표를 하여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7. 논문의 국문 핵심단어와 영문 핵심단어는 3-5개 제시한다.
8. 국문과 영문 요약문(연구단편 포함)은 200자 원고지 5장 또는 A4 용지 단면 1/2 장 이내로 작성한다.
9. 본문에서는 논문의 제목을 본문의 첫 장에 기재한다.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 심사위원이 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서술은 삼가야 한다. 세부적인 본문 서술 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본문은 내용의 구성을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3단계 정도의 소제목을 추천한다. 소제목은 I., 1., 1), (1), ①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한다.
 - 2) 저술 인용방식은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 연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용 페이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같은 저술을 되풀이 인용할 때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 연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
 예 1, “..... 설동훈(1999: 10)”; 예 2, “..... (설동훈, 1999: 10)”
 - (2)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한글로 쓰고 원명은 괄호 속에 담는다.
 예, “.....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85)”
 - (3)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예, “..... (유길상·이규용, 2001)”
 -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외”를 사용한다.
 예, “.....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과 그 이후 “..... (이규용 외, 2007)”
 - (5) 출판 예정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출판예정”(또는 “forthcoming”)을 부기하고, 미간행물일 경우에는 “미간행”(또는 “unpublished”)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예, “..... (Gereffi, Spener and Bair, 2002 forthcoming)” 또는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미간행)”
10.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한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

의 가나다 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다음은 참고문헌 작성 원칙에 따른 예다.

(1) 도서

-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유길상·이규용. 200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 방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Lin, Nan. 2002.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rnelius, Wayne A., Takeyuki Tsuda, Philip L. Martin, and James F. Hollifield (eds.). 2004.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2nd Edi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ereffi, Gary, David Spener, and Jennifer Bair (eds.). 2002 (forthcoming). *Free Trade and Uneven Development: The North American Apparel Industry After NAFTA*.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2) 학술지 게재 논문

- 박경태. 2001. “사회적 자본으로서 NGO의 역할과 아시아 이주노동자 문제: 필리핀과 홍콩의 NGO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2(겨울): 184-205.
- 설동훈·김윤태. 2004. “대만의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체계.” 《중소연구》 28(3): 69-117.
- 이해경·정기선·이정환·설동훈. 2002. “국내외 한국기업의 외국인력 관리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식 관리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3): 47-77.
- Granovetter, Mark.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481-510.
- Brown, Jacqueline Johnson, and Peter H. Reingen. 1987. “Social Ties and Word-of-Mouth Referral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 350-362.

(3) 단행본 수록 논문

- 이철우. 2004. “피로써 구별되는 국민들: 혼혈인과 한국사회.” 정인섭 편,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 pp. 233-261.
- 町村敬志(마치무라 타카시). 1992. “グローバルゼーションと世界都市形成.” 梶田孝道 編, 『國際社會學: 國家を超える現象をどうとらえるか』.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pp. 114-133.
- 森田桐郎(Morita, Kirirora). 1987. “資本主義の世界的展開と國際勞働力移動.” 森田桐郎

編, 『國際勞働力移動』.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pp. 1-54.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Pp. 241-258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ohn G. Richards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4) 번역도서

伊東順子(Ito, Junko). 2001. 『病としての韓國ナショナリズム』. 東京: 洋泉社. (김혜숙 역. 2002. 『한국인은 좋아도 한국민족은 싫다』. 개마고원).

Castells, Manuel. 1989. *The Informational City: Information Technology,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Urban-Regional Process*.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최병두 역. 2001. 『정보도시: 정보기술의 정치경제학』. 한울).

Weber, Max. 1946.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and edited by Hans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5) 번역논문

Weber, Max. 1893. "Die landliche Arbeitsverfassung." *Schriften des Sozialpolitik* 58: 62-86. (임영일·차명수·이상률 역. 1991. "농업노동제도." 『막스 베버 선집』. 까치. pp. 289-314).

Weber, Max. 1946[1919]. "Politics as a Vocation." Pp. 77-128 in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and edited by Hans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6) 미간행 학위논문

최홍엽. 1997.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미간행).

Lee, Young Hwan. 1991.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n Labor Market Outcomes: A Case Study of Kore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tanford University.

(7) 학술회의 발표논문과 미간행 자료

설동훈.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권리와 생활실태." 『한국아동권리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 아동 소외의 현장 —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한국아동권리학회. pp. 54-81. (숙명여자대학교 제2창학관 켄마홀, 2006.5.19)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 인권침해의 현장보고』.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미간행).

Schrecker, Ted. 1996. "The Borderless World and the Walled City: Metaphors for North American Social and Economic Life in the Twenty-First Century." Paper Presented at a workshop a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Vancouver, BC, Canada, March 1996. (Unpublished).

(8) 인터넷 자료

서울특별시. 2001. 『서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여론조사』. (<http://www.metro.seoul.kr/kor2000/research/total/down/11/11-12.pdf>에서 가용. 인터넷; 2002년 7월 31일 접속).

U.S. Department of State. 2001.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01*. (Available from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4107.pdf>. Internet; accessed February 7, 2002).

ABCNEWS. 1998. "Women Forced to Work: Forced Abortions Are Conducted on U.S. Territory." *ABC News World Headlines*, April 1, 1998. (Available from <http://www.abcnews.com/sections/world/DailyNews/saipan0331.html>. Internet; accessed March 25, 1998).

(9) 동일 저자의 같은 해 저술

설동훈. 2002a. "국내 재중동포 노동자: 재외동포인가, 외국인인가?" 《동향과 전망》 52 (봄): 200-223.

_____. 2002b.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현대판 노예인가, 외국인 용병인가?" 《당대비평》 6(1): 53-68.

Petras, Elizabeth McLean. 1980a. "The Role of National Boundaries in a Cross-National Labour Market."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4(2): 157-195.

_____. 1980b. "Towards a Theory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New Division of Labor." Pp. 439-449 in *Sourcebook on the New Immigration: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dited by Roy Simon Bryce-Laporte.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11. 표와 그림은 별지에 작성하고, 제목은 표와 그림의 위에 적는다. 주는 "주:"라고 시작하고, 출처는 "자료:"로 시작하여 표와 그림의 아래에 적는다.

12. 이 요강에 미비된 기타 사항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이민학》 제2권 제1호의 관례에 따른다.

13. 원고 작성에 대한 문의처

☎ 561-75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연구실 내 《한국이민학》 편집위원회

전자우편: kimanet2007@gmail.com

전화: (063) 270-2917

한국이민학 제4권 제1호

인쇄일: 2013년 6월 30일

발행일: 2013년 6월 30일

발행인: 이철우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

전자우편: kimanet2007@gmail.com

인터넷 홈페이지: www.kimanet.org

인쇄처: 도서출판 기쁨사

전화: (031) 889-4451

팩스: (031) 889-4452

ISSN 2093-6044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Vol.4 No.1 2013

Articles

Immigra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System in Ireland

■ Byoungha Lee

Belgium's Immigra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r
Immigration

■ Choonghoon Lee

Immigration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System in France

■ Dong-Hoon Seol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